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2019.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1 개최 개요

■ 목적

- '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책방향 소개, 사업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사업 수혜자 편의 제공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지역	장소	주소
1	7.8(월) 14:00~17:00	대전충청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2	7.8(월) 14:00~17:00	대구경북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3	7.9(화) 14:00~17:00	서울강원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4	7.9(화) 14:00~17:00	광주호남	호남대학교 상하관 세미나실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5	7.12(금) 14:00~17:00	경기인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6	7.12(금) 14:00~17:00	부산울산경남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 참석인원 : 2,250여명 내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상인대표 등 전통시장·상점가 상인, 지자체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담당자 및 사업 관계자

구분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경기인천	대전충청	합계
예상인원(명)	450	500	300	400	300	300	2,250

2 설명회 구성

■ 주요내용

○ 주차환경 개선 (30분, 중기부 시장상권과, 지방청 담당)

○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에 대한 안내

○ 경영현대화 기한 내 신청사업 및 수시사업 등 (120분, 공단)

① 온누리상품권 (20분, 상품권사업실)
○ 온누리상품권 사업세칙 및 부정유통 안내
② 바우처지원사업 (30분, 마케팅지원실)
○ '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개요, 운영체계, 공동마케팅 등 세부사업계획
③ 특성화지원사업 (30분, 특성화지원실)
○ 특성화첫걸음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 등 3대 서비스 혁신(편리한 지불결제, 고객신뢰 제고, 위생 및 청결)과 2대 조직 역량(상인조직 강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한 통합 특성화 지원사업 안내
④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20분, 상권육성실)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컨설팅 지원 등 복합청년몰 사업 안내
⑤ 화재알림시설 (20분, 시장안전관리팀)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정비사업 등 안내

■ 세부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3:00~14:00	60분	교육접수	공단
14:00~14:10	10분	인 사 말	중기부, 공단
14:10~14:40	30분	'20년 주차환경개선 사업안내	중기부
14:40~15:00	20분	온누리상품권 사업안내	공단 담당부서 사업안내 (질의응답 포함)
15:00~15:10	10분	휴식	
15:10~15:40	30분	바우처지원 사업안내	
15:40~16:10	30분	특성화지원 사업안내	
16:10~16:20	10분	휴식	
16:20~16:40	20분	복합청년몰조성 사업안내	
16:40~17:00	20분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 사업안내	

Contents

■ '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I.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01
1. 주차환경개선	03
2. 온누리상품권	07
3.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20
4. 특성화시장 육성	25
5. 청년몰 조성사업	35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	36
6.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8
노후전선 정비사업	40
II.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43
1. 시장경영혁신지원	51
2.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83



I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1. 주차환경개선
2. 온누리상품권
3.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4. 특성화시장 육성
5.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
6.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2020년 사업설명회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019. 7

1



주차환경개선사업

I

주차환경개선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이용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및 활용 지원



규모

- 80개 시장 내외 (이용보조: 20곳 내외)
※ 공영주차장 건립: 1219억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12억원



대상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제외 대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 시장, 보조금 부정사용 및 허위신청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지급결정 취소 또는 반환된 경우
- 매칭: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
※ 다만, 성장촉진지역 (국비 70%),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 (국비 80%)



내용

- (공영주차장 건립)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지원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전통시장 인근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 활용비용 지원
- (공설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지원



기간

- 선정일 ~ '20. 12. 31.
※ 단,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 공사기간 등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

II

주차환경개선 신청·선정 절차



신청

- 신청 및 접수: ~ '19. 7. 31. 까지 (시장 → 시·군·구 → 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63)



선정절차

공영주차장 건립



주차장 개보수 및 이용보조



신청서류

-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60% 이상)
- 이해 관계자 동의서(접수, 상인, 주차장 및 진입로 인접주민 등)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필요)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 지방비 투융자심사결과서 또는 당해년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III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차장 건립지원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적용 (2018년부터 지하주차장도 건립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 위치·건축계획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상인·주민)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주차장 운영·수익금 처리방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실시
- 지원예산의 효율성 및 주차장 건립이후 관리문제 등 해결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을 필히 작성 (신청서 내에 포함)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결과보고서 제출 必)
- 사업신청 해당 전통시장 상인수의 60% 이상 동의 필수
- 주차장의 위치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 지자체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 ※ 단, 정부지원금을 받아 건립된 주차장은 지자체 현물의 범위에서 제외
-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지원대상 통보 후 3개월 이내 부지매입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
-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국비 보조비를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

III

신청 시 유의사항

주요 우대조건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및 주차장 미보유 시장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신청서 내 내용포함)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신청 시 민간보험 가입점포현황 제출)
-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 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신청 시 화재감지기 설치점포현황 제출)
- 정부 지정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주차빌딩 등 규모화 지원

- 지하주차장 건립지원 허용, 주차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주차빌딩 등 규모화 지원
 - 평균 80면 이상 확보 가능 토목 지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도 부족한 곳은 추가지원 가능)
-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은 공공·시설주차장 이용보조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부지 확보 시 건립 지원
 - (공공 및 시설) 사업 선정 후 국비 우선 지원, 지방비 후속 투입 방식 도입(국비 선지원, 지방비 추후 편성 가능)

● 집행부진 방지

- 집행부진 방지를 위해 년도내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 2년차 사업으로 추진(신규설치, 대규모 증설 등)
- 선정통보 후 5개월이 지나도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보시장과 경합하여 부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진 곳에 예산 배정
 - 년도내 완공이 가능한 경우 단년도 사업 가능
 - 1년차와 2년차 사업비가 20%이상 차이나는 경우, 중기부와 협의 후 추진
- 사업예산 실행률을 50% 미만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 특히, 주차장 건립 신청 시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집행가능 예산만 신청

● 자금교부

- 사업비는 중기부에서 시·군·구로 교부하여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
- 선정통보 후 국비교부 요청 및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국비 교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부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장)에 청구

감사합니다

2



온누리상품권 발행

- I 사업개요
- II 온누리상품권 가맹
- III 부정유통방지
- IV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I 사업개요

사용 및 환전이 편리한 전국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발행규모 ● '19년 2조원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발행주체 ● 중소기업부
* 위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확대를 위한 판매촉진 활동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

I

사업개요

상품권 종류

지류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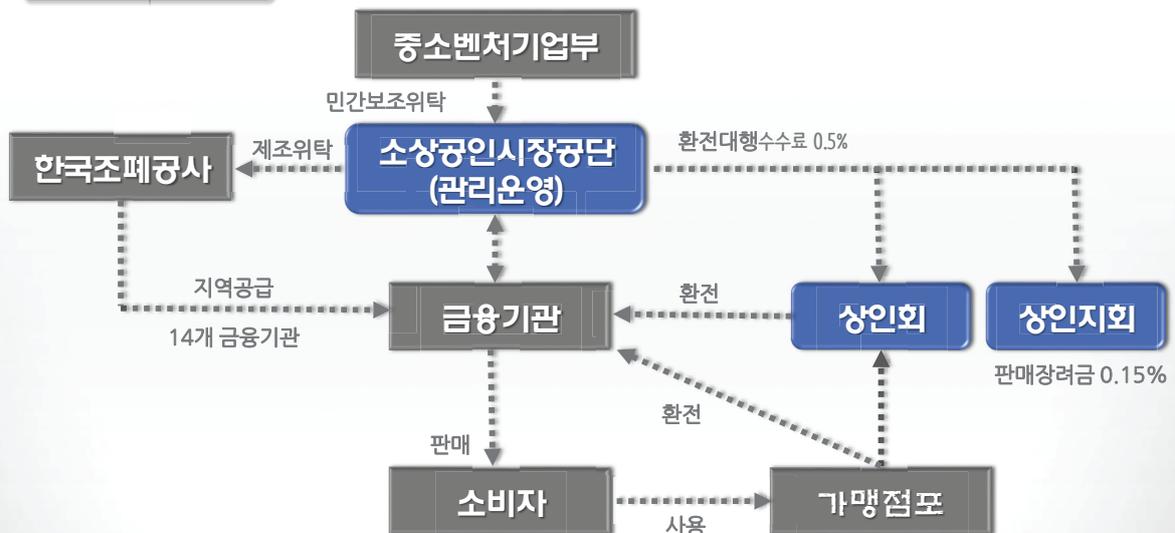
전자상품권



I

사업개요

운영체계



< 판매촉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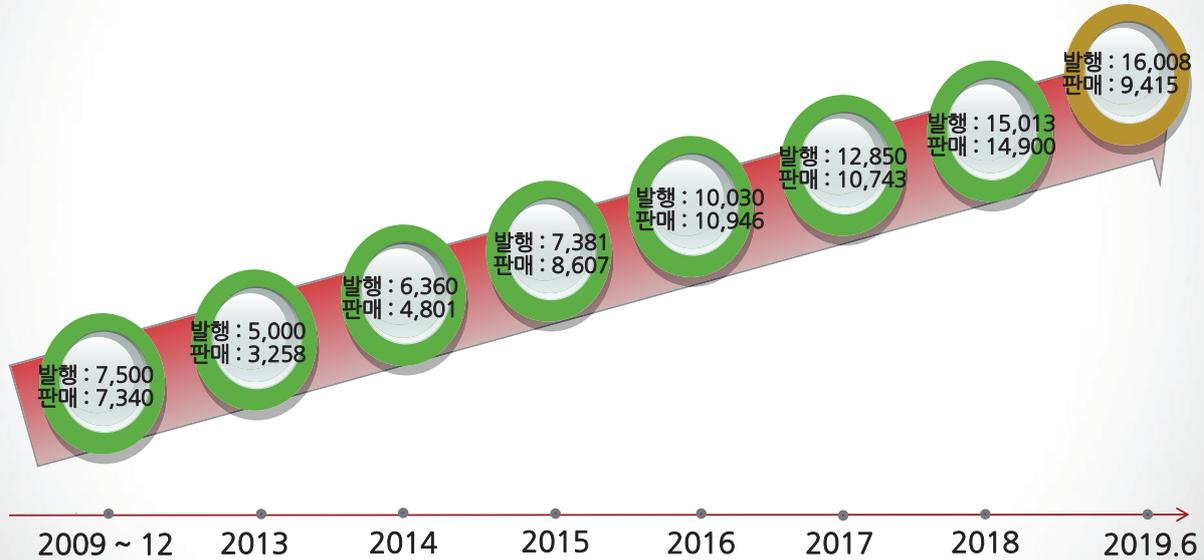
-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의무구매 비율 상향 (30 → 40%)
- 공공부문 관광 구매비율 확대(경상경비 1 → 1.5% 구매)
- 동반성장지수 반영(1.0점)

I

사업개요

연도별 발행 및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누적발행액/누적판매액 : 80,205억/70,025억 ('19.6월 기준)

II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맹신청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별가맹점

- 전통시장(등록/인정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
- 해당시장 상인회 승인을 득한 경우 시장 내 노점도 가입 가능
- 단, 시장 내 소재한 점포일지라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 14에 따라 등록제한 업종 (ex. 지주회사, 금융업, 부동산업, 보건업, 유흥업 등) 일 경우에는 가맹 불가

환전대행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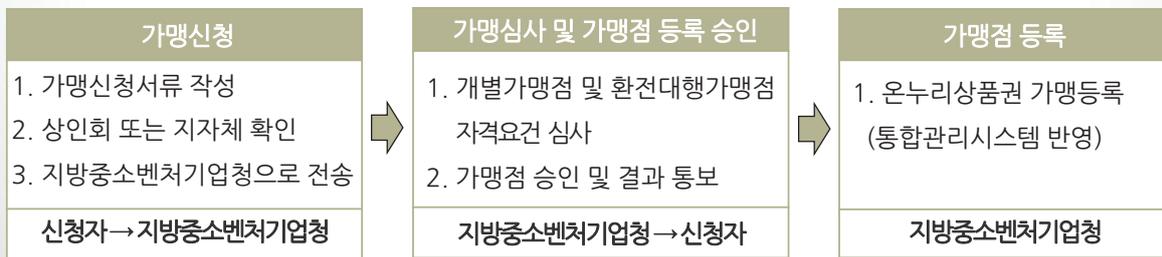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조직(상인회)

II 온누리상품권 가맹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 온누리상품권 인지도 향상에 따른 고객 유입 효과
- 환전수수료, 카드수수료(전자상품권) 등 가맹점 관련 수수료 없음
-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상품권 안내 리플릿 및 포스터 등 홍보물 무상지원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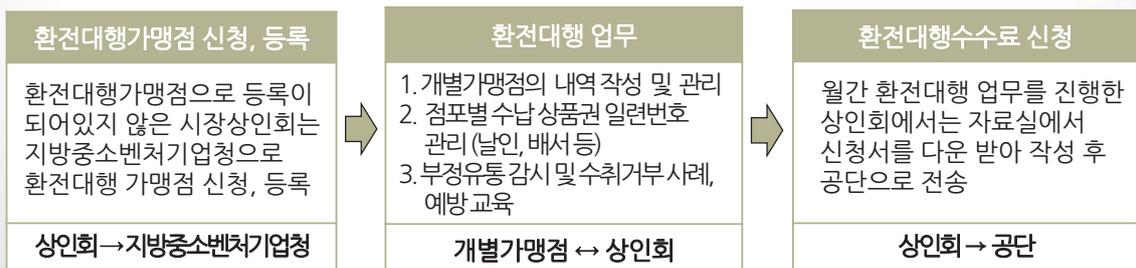


II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전대행가맹점

- (역할) 상인회에서 소속 개별가맹점의 상품권을 회수하여 환전을 대행
- (환전대행수수료) 공단에서는 환전대행업무를 수행한 상인회에 수수료를 지급
 - * 상품권 회수금액의 0.5%, 240만 한도/월(충당금 제외)
 - * 단,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은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을 받아야 함

환전대행수수료 신청



II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맹점 환전한도

개별가맹점

- 개별가맹점 기본한도 월 1천만원 → 최대 5천만원까지
 - 월별 환전한도는 가맹점의 월 평균매출 금액기준 5백만원 단위로 상향
 - * 1천5백만원, 2천만원, 2천5백만원, 3천만원, 3천5백만원, 4천만원, 4천5백만원, 5천만원
 - 한도상향 금액의 승인기간은 신청서 제출월로부터 1년

환전대행가맹점

- 환전대행가맹점 기본한도 → 최대 10억원까지
 - 월별 환전한도는 가맹점의 월평균 환전대행금액 기준으로 상향
 - * 소형시장 1억원, 중형시장 3억원, 중대형시장 5억원, 대형시장 7억원
 - 한도상향 금액의 승인기간은 신청서 제출월로부터 1년

II 온누리상품권 가맹

온라인 전통시장관

추진배경

-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각종 온라인 쇼핑몰 확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에 악영향
-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시장 상인도 온라인으로 상품판매하고, 판로확대 및 신규고객 발굴, 매출증대 추진 필요

전통시장관

- 온누리 전자상품권 전용 쇼핑몰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만 입점할 수 있는 쇼핑몰(8곳)

사랑과 정이 넘치는 한마당
우체국 전통시장
sijang.epost.go.kr(전통시장관)

온누리 전통시장
www.onnuri-sijang.com

온누리팔도시장
www.e-jangter.com

Fish SALE
www.fishsale.co.kr

제주전통시장 **쇼핑몰**
www.market.jeju.kr

사랑의정경
온누리장터
www.ktmall.com

이제너투 **온누리시장**
www.onu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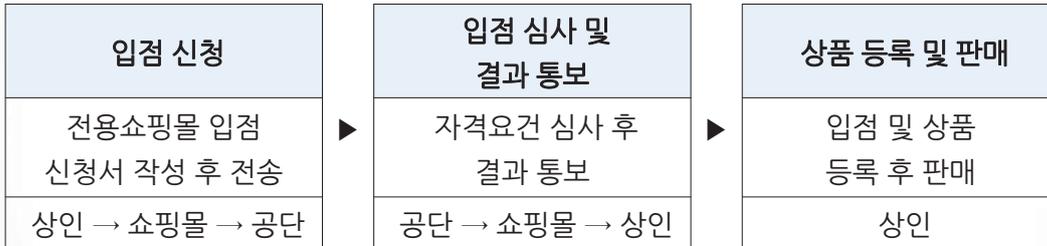
e경남몰
egnmall.net

II

온누리상품권 가맹

입점 신청방법

- 전통시장 상인이 쇼핑물에 입점 신청하면, 공단 자격여부 심사 후 입점 승인
 * 입점 자격 : 온누리상품권 지류 또는 전자 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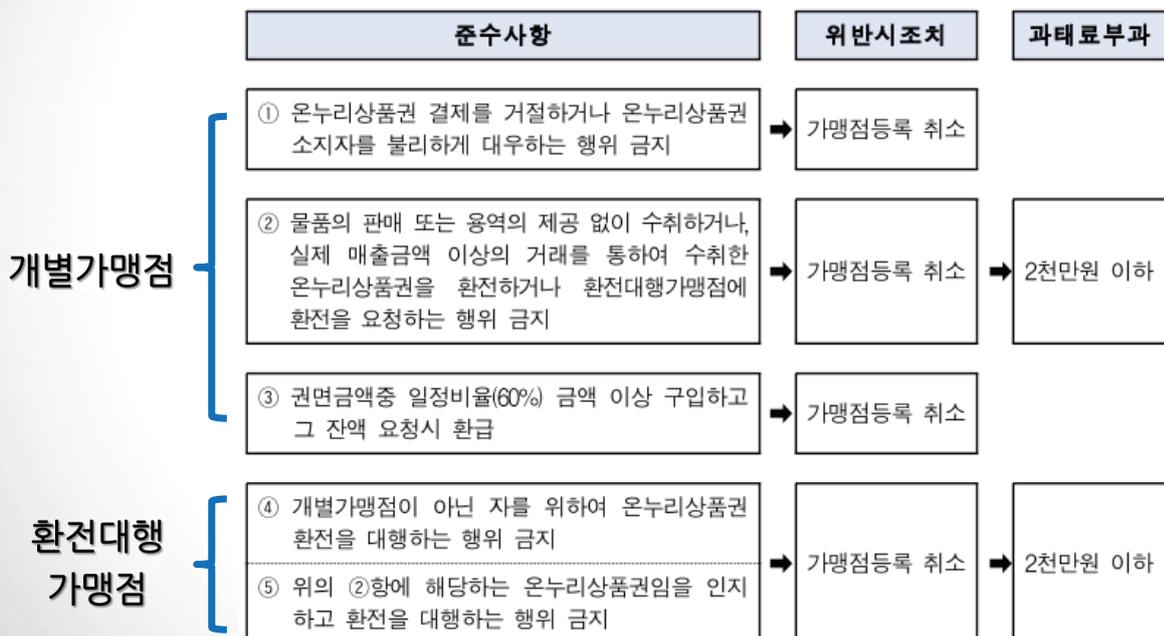
- 온누리전자상품권 전용쇼핑물 입점신청서(통합) 양식 다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자료실
 -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

III

부정유통방지

가맹점 준수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 5



III

부정유통방지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사례

- 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예시 1) A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상품권 결제 요청 거절
(예시 2) B점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소비자 요청 거절

“위반시 가맹점 취소”

-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예시 1) A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10% 할인 받아 구매한 후(가족, 지인 등 동원), 상품권 환전 ⇒ 10% 부당이익 취득
(예시 2) B점포는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온누리상품권을 물품의 거래 없이 환전

“위반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2천만원 이하”

III

부정유통방지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사례

-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예시 1) A점포는 월 매출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점포이나 상인회를 통하여 월 2,000~3,0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

(예시 2) B점포는 친분이 있는 시장구역이 아닌 C마트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

“위반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④ 권면금액 60%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요구 거절

(예시 1) A점포는 총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자의 잔액 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80%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잔액 환급 응대

“위반시 가맹점 취소”

III 부정유통방지

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사례

○ 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예시 1) A시장 상인회는 상인회 임원과 친분이 있는 시장구역이 아닌 C마트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

(예시 2) B시장 상인회는 개별가맹점 등록하지 않은 D점포의 온누리상품권 환전 대행

“위반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② 부정유통에 해당하는 온라인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예시 1) 소속 시장 개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10% 할인 받아 구매한(가족 등을 동원) 상품권임을 인지하였으나, 그 온누리상품권을 환전을 대행

“위반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2천만원 이하”

III 부정유통방지

환전대행가맹점 관리사항

① 상인회 소속 점포를 대상으로 **개별가맹점 등록하여 관리·감독**

- 환전대행가맹점에서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가맹점 등록·승인을 받은 소속시장 개별가맹점에 한해 환전대행 실시

- 미가맹점(미등록 점포) 환전 대행 절대 불가

- 환전대행 시 개별가맹점 환전한도 관리, 개별가맹점의 기본한도 준수, 환전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한 정산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가맹점 리스트 확인 방법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포찾기

부정유통방지

환전대행가맹점 관리사항

② 환전대행 시 수납가맹점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택1)

[개별가맹점별 상품권 수납내역]

환전 일자	점포명	환전 금액	일련번호
18.6.18	온누리상회	50천원	271810101010001
			271810101010002
			271810101010003
			271810101010004
			271810101010005
18.6.18	OO상회	15천원	271810101010006
			271810101010007
18.6.18	XX정육점	5천원	271810101010008

① 상품권 수납 일련번호 작성

② 상품권 상의 확인

③ 개별가맹점명 기재

부정유통방지

환전대행가맹점 관리사항

③ 개별가맹점 대상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및 부정유통 예방교육 실시

- 환전을 대행하는 개별점포에서 상품권 수납거부 또는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감독

※ 전통시장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준수 촉구

기타사항

•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 상인회 직인 금지

- 특별할인기간 등 개별가맹점이 가맹취소 후 재등록을 요청할 경우, 부정유통이 의심된다면 상인회 직인 금지 ➡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

• 폐업 또는 이전 등의 사유 외에 특별판매기간 전후로 가맹취소 시, 6개월간 재등록 불가

III

부정유통방지

환전대행가맹점 제재기준

환전대행수수료 지급중단 기준

- 세척 제15조 3항 환전대행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개월간 지급중단
- 환전대행가맹점에 행정처분(과태료, 가맹취소) 조치가 있을 경우
 - 1회 조치 시 1년간 지급 중단
 - 2회 이상 조치 시 3년간 지급 중단

환전대행수수료 총당금 인센티브 삭감·지급중단 기준

- 소속 개별가맹점에 행정처분(과태료, 가맹취소, 서면경고) 조치가 있을 경우
 - 1회 조치 시 인센티브의 50% 차감
 - 2회 조치 시 인센티브의 70% 차감
 - 3회 이상 조치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환전대행수수료 지급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인센티브 지급 제외

III

부정유통방지

부정유통신고

신고목적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및 의심자 적발 등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한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조성

신고방법

- ①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참여마당 - 신고페이지
- ② 신고이메일(onnuri@semas.or.kr)로 접수
- ③ 상인연합지회, 상인회 현장접수
- 부정유통신고서 및 위반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녹취 등) 제출

포상금

- 10만원~최대 1천만원
- ※ 포상금 결정은 행정기관의 가맹취소 통보 및 과태료 부과일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일 기준으로 하며,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함

III 부정유통방지

신고포상금 제도

구분		포상금	결정기준	지급방법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행위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편취금액(부정차액)의 20% 이내 (최소 50만원~최대 1천만원) * 단, 과태료 부과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일 기준	온누리 상품권 또는 현금 (계좌이체)
	가맹점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0만원	가맹점 취소일 기준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나 과태료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	신고사항에 대해 위반 행위가 확인된 일 기준	
유통환경 저해행위 등	10만원	신고사항에 대해 위반 행위가 확인된 일 기준		

※ 포상금은 1회 최대 1,000만원, 1년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신고자 1명당)

IV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최근 모바일 결제시스템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도 고객 편의에 맞춘 모바일 기반 온누리상품권 도입



개요

- (개념) 모바일을 통해 상품권을 포인트로 구매하여 결제
- (발행) 3,000억원 예정



결제

- QR결제 방식

STEP.01
간편결제 앱 실행
소비자는 결제에 사용할 간편결제 앱을 실행합니다.

STEP.02
QR코드 촬영
소비자는 간편결제 앱의 QR코드 촬영모드로 가맹점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합니다.

STEP.03
금액입력
소비자는 결제 앱에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별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



추진배경

- (수요측면) 세분화된 사업별 신청 불편, 정책 수요·공급 불일치
- (공급측면) 지원사업별 공고·선정·지원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추진방향

- 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 부문을 선택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수행기관·전문기관 활용범위 확대



대상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중 5개 세부사업을 통합·운영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컨설팅, 배송서비스, 시장매니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안내

부여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추진



지원규모

- 250곳 내외, 최대 6천만원(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7여곳 포함)
- 지방청별 예산(바우처) 및 선정시장 규모 등 한도 배분



지원내용

- (사업지원바우처) 마케팅서비스, 교육서비스, 경영자문
- (인력지원바우처) 매니저서비스, 배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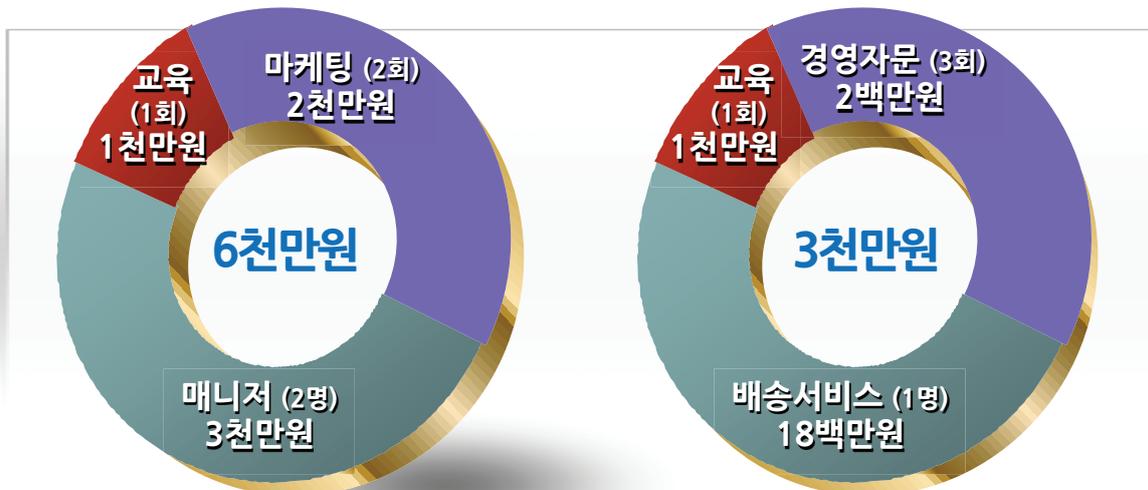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의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 중 상인조직을 갖춘 곳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안내

예시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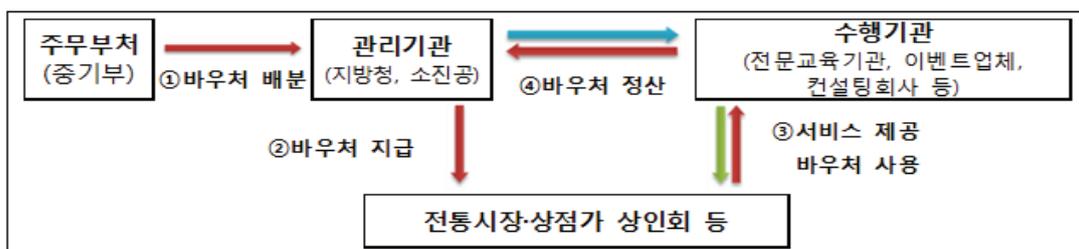
지원내용

※ 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다음 내용 자율 추진

분야	지원내용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브랜드(BI, CI)개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온라인 카탈로그, 디자인개발(브로셔, 포장지 등), 전통시장 지도 제작, 스토리 북 제작, 외국어자료, 리플렛, 브로셔 제작, TV·신문 잡지·SNS 홍보, 광고제작, 포털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판촉전 등
상인교육	경영교육,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개발교육, 세법·회계교육, ICT교육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코칭, 경영멘토링, 법인설립 자문, 지적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배송서비스	시장 고객 대상 근거리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콜센터, 배송)
시장매니저	상인회 행정, 이벤트 및 축제 기획, 사업 유치지원 등을 수행할 인력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안내

바우처 흐름도



* 인력지원바우처는 수행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상인회 고용, 소진공 직접 정산

- ① 배분 : 중기부에서 지방청에 바우처(등급별 시장 수) 총량 배분
- ② 지급 : 지방청은 선정된 시장에 바우처 지급
- ③ 사용 : 선정시장 등은 바우처를 사용해 각 수행기관을 통한 사업 수행
- ④ 정산 : 수행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소진공에 정산 요청
결과 적정성 확인 후 소진공은 수행기관에 바우처 정산
중기부는 소진공과 수행기관 간 바우처 정산 검토



시장경영bauer지원사업 신청



모집기간

- 2019년 6월 28일 ~ 7월 31일



제출서류

- 시장경영bauer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전통시장 입증서류 및 사업비(지방비) 부담 협약서 등



제출방법



※ 시·도 제출 마감기한이 7월 31일이므로 **전통시장은 꼭!! 마감전** 시·군·구 신청 필요



시장경영bauer지원사업 신청



지원조건

- 최대 6천만원 ~ 최소 3천만원

지원분야	사업내용	사업비매칭
사업지원	마케팅, 교육, 경영자문	국비 90%, 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점포수 299개 이하인 곳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영업점포수 300~799개인 곳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영업점포수 800개 이상인 곳 :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우대조건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19년 시장경영bauer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아래 사업지원을 받지 않은 곳
 -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시장컨설팅
- 제로페이 및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최근 3년 내 '전통시장 유공 포상(단체)'을 수상한 곳

유의사항

- 반드시 전문교육 등의 상인교육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20년부터 적용)
-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시장으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업 추가 실시 불가
- 인력지원바우처 사용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필수
- 배송 및 매니저서비스 계속지원시장이 바우처 선정시 바우처지원금에서 계속지원 예정액 차감 후 지원

감사합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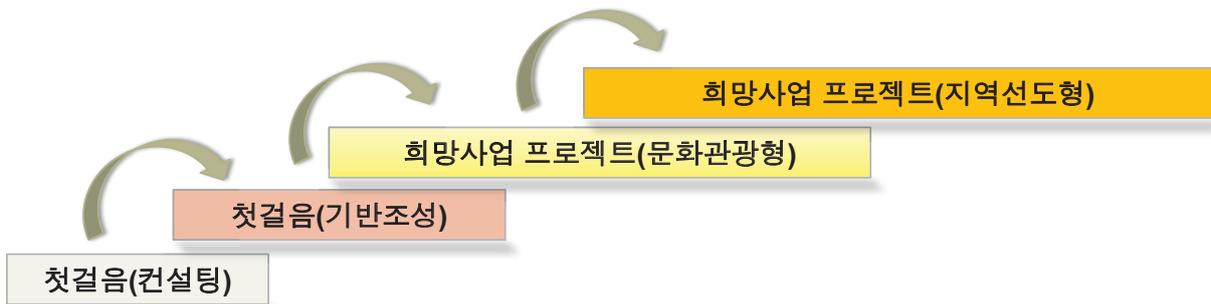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I 2020년도 사업 추진방향
- II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사업
- III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컨설팅) 사업
- IV 사업신청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I 2020년도 사업 추진방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체계

특성화 기지원 시장	<특성화 추진역량 평가> ① 편리한 지불결제 수준 ② 가격·원산지 표기 등 고객신뢰 수준 ③ 시장 및 점포 위생청결 수준 ④ 상인조직 역량 ⑤ 시장 안전관리, 화재예방 수준 ⑥ 기지원 특성화시장 사후관리 성과등급	우수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보통 이하	자체 역량강화 (지원 제외)
특성화 미지원 시장		우수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보통 이하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I

2020년도 사업 추진방향

2019년도 대비 달라진 점

2019년

■ 사업기간

- 1년차 : 2019년7월~2020년2월(약 8개월)
- * '19년 1월 신청공고, 5월 지원시장 선정, '19년 7월 사업 본격추진

■ 지방부담금 동일

-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고려치 않고 모든 지원시장이 동일하게 국비 지방비 5:5매칭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별개로 신청지원

2020년

■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 1년차 : 2020년1월~2020년12월(약 12개월)
- * '19년 7월 신청공고, 12월 지원시장 선정, '20년 1월 사업 본격추진
(3개월 이상 사업기간 추가 확보)

■ 지방부담금 차등화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추진단계에 따른 가점 부여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의 추진 단계(신청, 선정, 완료)에 따라 가점 부여
- * '20년 신규 신청시장가점부여

II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사업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



규모

- '20년 계획(안) : 3곳 내외 - **신규시장 2곳**, 2년차 계속시장 1곳
- 시장 당 2년간 최대 20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차등규모는 별도 안내)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공고일기준, 특성화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지자체 추진 종합지원사업(서울형신시장사업 등) 이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신청일기준, **점포별로 체결 필수**)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률) 각 80% 이상(신청일기준)
- 광역권역 내, 글로벌 및 지역선도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2곳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 '20년도 신청가능 지역 :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경남, 전남(이상 7개 광역권역)

II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사업



내용

-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콘텐츠 개발
-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사후면세점, 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경제형 서비스 제공(작은도서관, 미니식물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 다른 시장 또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형 수익모델 개발 및 추진 등

II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고유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형 프로젝트 지원



규모

- ‘20년 계획(안) : 86곳 내외 - **신규시장 44곳 내외**, 2년차 계속시장 42곳
 - 시장 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차등규모는 별도 안내)
 - **신규시장 44곳 내외에는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에서 도약하는 시장도 포함**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공고일기준, 특성화 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지자체 추진 종합지원사업(서울형신시장사업 등)이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신청일기준, **점포별로 체결 필수**)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률) 각 80% 이상(신청일기준)

II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



내용

-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 디자인 재생(복합문화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

III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특성화 사업경험은 없으나 발전 가능성 높은 시장을 선별하여,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수행함으로써 특성화사업 기반조성 지원



규모

- '20년도 계획(안) : 30곳 내외
- 시장 당 1년간 3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차등규모는 별도 안내)
- 사업 성과에 따라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도약 가능(+2년, 10억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시장(사업신청일 기준)
-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률) 각 70% 이상

★ 지원제외 : ①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③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Ⅲ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내용

- 3대 서비스 혁신 지원
 - ① (편리한 지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 ② (고객신뢰)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환불/AS, 친절맞이인사 등
 - ③ (위생청결) 상품진열, 시장 공용공간 및 점포별 청결상태 등
- 2대 조직역량 강화 지원
 - ① (상인조직 강화) 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 이사회(총회) 운영 등
 -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소화기 비치, 화재예방훈련, 의용소방대 구성 등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도약 준비

Ⅲ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상권분석, 서비스 혁신전략 수립, 상인조직 역량 배양,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컨설팅 지원



규모

- '20년도 계획(안) : 20곳 내외
- 기간 : 시장 당 6개월 이내, 예산 : 15백만원 이내(전액 국비)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 특성화사업 및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지자체 추진 종합지원사업 등을 일체 지원받지 않은 곳으로서 **'19.7.24(수)부터 접수 순 지원**
- ★ 단, 기초지자체별 최대 2개 시장까지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 ①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III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내용

- 시장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해당시장에 맞는 개선방안 도출 등 종합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에 따른 구체적 5대 핵심과제 수행전략 도출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도약 준비
- ★ 컨설팅 사업에서는 시장진단-전략수립-컨설팅 실시-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 컨설팅만 실시, 실제 개선활동은 향후 기반조성 또는 타사업에서 진행

IV

사업신청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우대 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
 - 공고일 기준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공고일 기준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 의지원금액총액이 적은 곳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 50% 이상인 곳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인 중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
 - 추후, 사업선정 시 상인회 또는 지자체에서 육성사업단(3~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곳(단, 무상/유상지원 가점 차등 부여)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IV

사업신청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제외 대상

- 지역선도형 : ①공고일 기준 광역권역 내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 특성화 상위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2곳 이상인 경우, ②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문화관광형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첫걸음 기반조성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 사업 공고마감일 기준, 중기부 및 공단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제재가 유효한 곳
- 사업별 일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 문화관광형) 사업의 경우 '19년도 기준 문화관광형 계속 시장(3년차('17년 선정), 2년차('18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정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기한 내 사업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면 선정 예정

V

사업신청 절차 및 추진일정



신청 절차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및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 파일의 용량관계로 인해 불임이 정상적으로 첨부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최종 직인 날인된 PDF파일을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 신청서 제본서류는 우편으로 별도 송부
 -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최종선정)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기초지자체→소진공)
 - * 파일의 용량관계로 인해 불임이 정상적으로 첨부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최종 직인 날인된 PDF파일을 소진공 담당자 메일로 제출
 - *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제출 불필요, [붙임1] 지원신청서 및 [붙임2] 중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부분만 제출
 -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소진공(접수) → 중기부(최종선정)
- ※ 타 특성화사업과 달리 컨설팅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소진공으로 직접 신청

V

사업신청 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 일정

항목	일정	추진 내용	절 차
접수· 평가 및 사업 계획 수립	'19.7월	지원 신청서 및 프로젝트 계획 제출, 접수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8월	지원시장 선정평가	소진공(기초평가) 평가위원단(고객평가, 현장평가)
	9월/ 12월	후보시장 발표/ 최종시장 확정	중기부 신규시장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후보시장 발표 → 최종시장 확정
	'19.12~ '20.1월	사업단장 매칭 및 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	단장 매칭(사업추진협의회 논의/합의) 프로젝트 계획 구체화 (관계자 합동)
	'20.1월~	사업 착수	사업단, 상인회(상인기획단)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은 상기 일정과 상이함(선정 시 별도 안내)

※ (사업단장 매칭) 공단이 주관하는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200여명)에 한함

VI

Q&A

● (Q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Q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특성화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또는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의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단계를 생략하고 기반조성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사업단계 : ①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②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③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 ④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 (Q3)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또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지역선도시장)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시장도 금번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시장은 최상위 단계의 지원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성화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VII 올바른 신청서 작성 예시

시. 장. 명	AAA시장 <small>*전통시장 신청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small>					
광역지자체	대전	기초지자체	중구			
소재지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개설일	2014.01.01	등록/인정일	2014.01.11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건물형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지하상가 <input type="checkbox"/> 도매(형)시장 <input type="checkbox"/> 5일장(날짜: ,)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input type="checkbox"/> 법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개인시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인회	점포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120)개, 빈점포 (20)개 총 노점 (20)개 = 상인회 가입노점 (10)개 + 미가입노점 (10)개 총 점포 ¹⁾ (140)개 중 가입 점포 ²⁾ (115)개 = 가입률(82.1)% <small>1) '점포현황'란의 상설 영업점포+총노점 수 2) 상인회 가입 영업점포+가입노점</small>				
	가입률	①납부단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년 ②납부금 (20,000원/회) ③회원 (115)명 중 (100)명 납부 * 납부율 = (86.9)%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윤누리상품권 가맹률	구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140	10	130	110	84.6
<small>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불임]의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윤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점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small>						
제로페이 가맹률	상설 영업점포 ³⁾ (노점, 빈점포 제외) (120)개 중, 가입 점포 ⁴⁾ (80)개 = 가입률(66.7)% <small>3) '점포현황'란의 상설 영업점포와 동일 4) [불임]의 제로페이 가맹점포 목록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현장평가 시 부차적 검증)</small>					
경영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16년(2,500만원/일) → '17년(2,700만원/일) → '18년(2,750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16년(1,800명/일) → '17년(1,820명/일) → '18년(1,850명/일)				
사업단 사무실 제공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상세주소 : 대전 중구 보문로 248 지하1층)					
판매구성	<small>판매비중: 음식점 - 수산물 - 축산물 순 핵심포(유명점포): 보문 손칼국수, 보문 떡볶이집, 보문수산, 보문정육점 등</small>					
상권특성	주역가 인근 주거밀집 지역					
경쟁점포 현황	보문마트(0.3km), 홈플러스 서대전점(1km), 롯데백화점 대전점 (1.5km)					

상설 영업점포(120개) + 총 노점 수(20개)를 합산한 값이어야 함

상인회 가입률의 총 점포수(140개)와 같아야 함(상설 영업점포 + 총 노점 수)

①총점포수에서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를 뺀 숫자를 작성. 또한 가맹 제한업종 점포수는 반드시 [불임8]에서 작성한 점포수와 같아야 함

상인회 점포 현황의 상설 영업점포 수(120개)와 같아야 함

현장평가 시 실제 활용 가능 유무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예정이며, 무상제공과 유상제공은 가점 차등 부여 또한, 가점 받은 이후 사업단에 사무실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인회 제재 가능

VII 잘못된 신청서 작성 예시

(1) 상인회 점포 현황의 점포수와 상인회 가입률의 총 점포수가 다른 경우

상인회	점포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120)개, 빈점포 (20)개 총 노점 (20)개 = 상인회 가입노점 (10)개 + 미가입노점 (10)개 총 점포 ¹⁾ (120)개 중 가입 점포 ²⁾ (115)개 = 가입률(95.8)% <small>1) '점포현황'란의 상설 영업점포+총노점 수 2) 상인회 가입 영업점포+가입노점</small>
	가입률	①납부단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년 ②납부금 (20,000원/회) ③회원 (115)명 중 (100)명 납부 * 납부율 = (86.9)%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총 점포수는 120개가 아니라 상설 영업점포 120개 + 총 노점 20개를 합산한 140개가 되어야 함
 ★ 총 점포수에 상설 영업점포수만 작성하거나, 상설 영업점포에 노점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 다

(2) 윤누리상품권 가맹 총점포수가 상설 영업점포 + 총 노점의 합계와 다른 경

상인회	점포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120)개, 빈점포 (20)개 총 노점 (20)개 = 상인회 가입노점 (10)개 + 미가입노점 (10)개 총 점포 ¹⁾ (140)개 중 가입 점포 ²⁾ (115)개 = 가입률(95.8)% <small>1) '점포현황'란의 상설 영업점포+총노점 수 2) 상인회 가입 영업점포+가입노점</small>				
	가입률	①납부단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년 ②납부금 (20,000원/회) ③회원 (115)명 중 (100)명 납부 * 납부율 = (86.9)%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윤누리상품권 가맹률	구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120	10	110	110	100
<small>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불임]의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윤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점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small>						

총 점포수는 상설 영업점포수와 총 노점수를 합친 값이므로 140개가 되어야 함

VII

잘못된 신청서 작성 예시

(3) 가맹가능 점포수에서 가맹제한업종 점포수를 제외하지 않은 경우

구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20	10	120	120	100

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붙임]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점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총 점포수(120개)에서 가맹제한업종 점포수(10개)를 뺀 110개로 작성해야 함

(4) '실제 가맹점포 수'는 시장 전체 점포 중 가맹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한 점포 수를 뜻함. 따라서 실제 가맹점포 수는 가맹가능 점포 수보다 클 수 없음

구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20	10	110	130	100

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붙임]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점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실제 가맹점포 수(130개)가 가맹가능 점포수(120개) 보다 크므로 잘못 작성

감사합니다

5



활력넘치는 시장 만들기

- I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II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사업

I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입점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규모

- 2개 내외 시장 ※ 사업기간 : ~'21.12월
- 시장 당 최대 30억원(ex, 소형: 10명, 10억 / 중형: 20명, 20억 / 대형: 30명, 30억)
-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10%) 지방비 40%(±10%), 자부담(청년상인) 10%
- ** 지자체가 점포매입 및 신축, 장기임차(5년이상)시 지자체 매칭비용 (40%) 인정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예정지)
- 500㎡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를 집적시켜 조성 가능한 곳
- * 상점가 예정지는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하여야 함
-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
- 복합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은 별도로 추진
- ※ 우대: 창업보육형 청년몰 /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지(18이후) /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 공설·지자체 관리·지자체 매입·신축/제로페이 가맹율 50% 이상 / 화재공제(보험) 가입율 50% 이상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 연계(신청 중, 설치 중)

“청년몰 조성 → 청년상인 영업 → **졸업** → 새로운 청년상인 모집, 양성”

I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자격

- 5년간임차(임대료동결)+이후3년간임차시임대료인상3% 이내
-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 아니며, 건물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조성에 이상이 없는 등급
- 신축인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 시설현대화,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 지원사업을 통한 설치 시설은 존속기한이 지나야 함
- 공고일 기준 시장 내 청년몰(관련 사업 포함) 운영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불가



의무

- 청년몰 내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화재공제(보험) 가입 의무
-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및 자치규약 제정 의무
-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점포(부지)의 70% 확보
- 민간건물은 5년, 지자체 소유(공설 등)은 10년간 청년상인만 입주
- 총 점포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오픈인큐베이터, 공용공간 조성



내용

- 기반조성 : 공용및편의시설조성, 도로경관정비, 간판개선등
- 입점지원 : 매장 임차료 및 인테리어 보조, 창업 컨설팅 및 교육, 마케팅 등
 - * (보증금 및 판매재료비, 집기) 지원불가
 - ** (임차료) 3.3 m당 월 110천원(최대 33 m), (인테리어) 3.3 m당 1,000천원(최대 33 m, 40%자부담)



절차

신청 상인회 지자체	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중소 벤처기업부	사업관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사업시행 각사업단	정산및평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	-------------------	------------------------	--------------	-------------------------

II 청년몰 활성화 · 확장지원사업

시장안착의 어려움을 겪는 기(既)조성 청년몰에 홍보·마케팅·판로확대를 위한 활성화 및 기반확장 지원



규모

- (활성화) 5개 시장, (확장) 5개 시장 내외 ※ 사업기간 : ~'21.12월
- * (활성화) 최대3억, (확장) 최대10억
-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10%) 지방비 40%(±10%), 자부담(청년상인) 10%



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따른 전통시장 및상점가중
‘15~18년청년몰(창업지원)기지원시장으로마감일 기준 사업종료(예정)시장
- ※ 우대 : 창업보육형 청년몰 /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지(18이후) /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 공설·지자체 관리·지자체 매입·신축/제로페이 50% 이상가맹 /
화재공제(보험) 가입율 50% 이상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 연계(신청 중, 설치 중)



자격

- 5년간임차(임대료동결)+이후3년간임차시임대료인상3% 이내
- 공실율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 60% 이상인 곳
- * '18년 이후 협약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이전시장은 반드시 체결)



내용

- (활성화)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매뉴개발, 공동상품개발등
- (확 장)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확장및 청년점포추가조성, 개보수등
 - * 화재감지시설설치, 협동조합 설립, 청년몰 성과측정시스템 반드시 포함(청년상인 직접지원 불가)
 - ** 타부처 및 민간협업의 경우 해당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III 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항목	일정	구분	추진내용	주체
접수 및 평가	'19.7월	공동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월		후보시장 현장평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후보시장 발표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계획 및 준비	'20.1월	공동	사업수행기관(사업단) 확정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3월		청년몰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 체결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사업단
			사업계획 승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업 추진	7월~10월	공동	시장별 세부시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추진	사업단, 지자체, 공단, 상인회
검토 및 정산	12월	공동	전문회계기관을 통한 회계정산 및 감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사업단, 전문회계기관

IV 주요 평가 지표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구분		평가요소	배점
서면	적부심사	의무조건(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등), 법률적합성, 참여제한 여부	합/불
	가·감점	추진유형(공설, 점포매입, 임대 등), 연계사업(도시재생, 특성화 등) 시급성(특별재난지역, 재정자립도 취약 지자체 등), 상권등급, 제로페이 및 화재공제 가입률 등	-5~+10
	정량평가	유동인구, 지원실적(역가중치), 상인회 및 상품권가입률, 화재안전 등급, 청년상인 영업지속율 등	30
현장	상권, 역량	청년몰 상권, 시장인프라, 시장과의 조화성, 상인회 역량 등	30
발표	성장성	특화전략, 확장성, 고객분석, 청년상인 지원방안, 유지관리 계획 등	40

6



안전한 시장 만들기

- I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II 노후전선 정비사업

I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 마련



규모

● 10,952개 점포 내외



대상

● 전국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

<필수조건>

- 전통시장 영업범포의 50% 이상 신청한 곳(사업추진 동의서 서명수)
- 민간부담금(30%) 확보가 가능한 곳(지자체 부담 가능)



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지자체와 관할 소방관서(소방본부, 소방서 등)와의 협의 하에 해당 시장에 적합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I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 시장(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119) 및 상인에 자동 통보시스템 구축

- * 개별점포형(골목형):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 오픈점포형(건물형):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 기본 구성도



I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즉시 대응을 통한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절차



조건

- 신청시장 개별 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이내

구분	비율	사업비
국비	70%	56만원
민간자부담*	30%	24만원

*민간자부담비용은 지방비로분담가능

II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기시설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및 전기시설 등을 정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



규모

- 40개 시장 내외 (시장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 * 매칭: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 1. 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는 신청 불가
- 2. 영업점포의 50% 이상이 신청한 곳(50% 미만 신청 불가)
- 3. 민간자부담(2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은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



내용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개별점포*의 노후전기시설 개선
- 배관공사 및 노후전선, 전등 교체 등 개선 지원(멀티탭 등 단순 일반제품 교체 지원 불가)
- * 공용구간은 별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진행

III

노후전선 정비사업



절차



우대조건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전기안전등급 C 이하)
- 민간자부담(지방비) 既 확보 시 우대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노후전선 정비 동의를 반영(동의를 구간별 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또는 공용구간 노후전기설비 정비 시장

III

노후전선 정비사업



사업추진 중점 사항

주요지원내용

-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노후화가 심한 개별점포의 전기설비 개선 지원
 - (분전반) 점포별 노출 또는 매입 분전반 교체 등
 - (옥내배선) 노후전선 철거 후 내열전선 교체 등
 - (배선기구) 노후 배선기구 철거 및 신품 교체 등
 - (전등) 노후전등 철거 후 LED전등 교체 등
 - (기타) 물기가 많은 장소의 경우 방수형 콘센트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 가능(공용구간 시설개선 지원 불가)

III

노후전선 정비사업

점포별 전기설비 개선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전등(조명) 교체
→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 LED 전등기구 교체 →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정비

※ 전기설비 교체 등 개선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구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환수 조치 가능))

* (예시) 상가건물형 시장 내 공용 분전반(개별 차단기를 통합하여 한곳에 설치한 상태) 사용 시 설비교체 지원 가능

Ⅱ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개별점포 전기설비 개선 사례(예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내용
분전반			○ 난연 분전반설치 (감전, 화재예방)
옥내 배선			○ 금속박스, 전선관 활용 노출배선 정리 (화재예방)
노후 전등			○ 고효율(LED) 등 기구 교체 (조도개선, 전기요금절감)
배선 기구			○ 난연 전선 및 전선관을 활용한 배선기구 설치 (감전, 화재예방)

감사합니다

II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1. 시장경영혁신지원
2.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공고는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19.9월 경)하고, '20년 예산 확정 시 후보시장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19.12월 예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 바우처 사용 범위 : 마케팅, 교육, 인력(매니저, 배송서비스), 컨설팅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지회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90~30% 지방비·자부담 : 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관측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선정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전체 사업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 30% 이상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시장 대표상품(특화콘텐츠)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사업, 민간 기업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시장 당 최대 20억원 (2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등 	시장 당 최대 10억원 (2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50% 지방비 :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 10% 차등지원)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 당 최대 3억원 (1년간)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역량이 취약한 시장의 상권 진단, 혁신전략 수립, 상인역량 강화, 중장기 발전로드맵 등 종합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시장 당 최대 15백만원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100%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상인 창업을 위한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모집, 교육, 창업 지원(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등),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몰 당 최대 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 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확장)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기반 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용시설 및 점포공간 확대 등을 지원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 카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카페 등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3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70% 자부담 : 3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노후전선정 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시장당 3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50% 지자체 : 30% 자부담 : 2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주차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 : 60% 지방비 : 40%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 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수처	사업명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문화관광형) ▪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19.6.28(금) ~ '19.7.31(수)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마우처지원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공단
	▪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전통시장 → 시·군·구 → 공단
지방자치단체 (시·도)	▪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특성화첫걸음시장 컨설팅) 접수순 지원으로 신청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¹⁾ (시장상권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16	042-472-793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²⁾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042-363-7635	042-367-7720
	▪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33	
	▪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문화관광형)	042-363-7622	042-367-7703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컨설팅)	042-363-7781	
	▪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042-363-7778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042-363-7778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775		

1)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부 시장상권과

2)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전화번호	주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4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주소
1	'19.7.8(월) 14:00~17:00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2	'19.7.8(월) 14:00~17:00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대구시 남구 명덕로 104
3	'19.7.9(화) 14:00~17:00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4	'19.7.9(화) 14:00~17:00	호남대학교 상하관 세미나실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5	'19.7.12(금) 14:00~17: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6	'19.7.12(금) 14:00~17:00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 ☐ 목 차 ☐ ☐

I . 시장경영혁신지원	51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	51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65
3.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74
4.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77
5.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사업)	80
6.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사업)	83
7.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119
8.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143
9.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63
10. 노후전선정비 사업	173
II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83
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183

I 시장경영혁신지원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250곳 내외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7여곳 포함

2 사업기간

- '20. 1월 ~ '20. 12월 까지
* 상기 사업기간은 차년도 사업선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곳
 -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을 통해 2년 연속 지원받은 자(인력서비스 제외)
 - '20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년차 또는 3년차 지원이 예정된 곳
-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을 제외한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만 해당
- ※ 2020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두 사업 중 선택하여 1개 사업만 수행 가능(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제외)

4 지원내용

-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최대 6천만원에서 최저 3천만원까지 바우처 차등 지급
-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제외(중복지원 불가)
- * '20년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이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계속 지원사업 지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바우처 금액 부여
- ※ 단, 상인연합회(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지급된 바우처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분야	지원내용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시장홍보자료(스토리북, 외국어 자료, 리플렛 등) 제작, TV·신문·잡지·SNS 홍보, 판촉전, 체험 프로그램 등
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회계, ICT 등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등
경영자문	코칭, 경영멘토링,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
배송서비스	시장 고객 대상 근거리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콜센터, 배송)
시장매니저	상인회 행정, 이벤트 및 축제 기획, 사업 유치지원 등을 수행할 인력

5 지원조건

지원분야	사업 내용	사업비 매칭
사업지원	마케팅, 교육, 경영자문	▶ 국비 90%, 자부담 10%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 영업점포수** 299개 이하인 곳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영업점포수 300~799개인 곳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영업점포수 800개 이상인 곳 :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 상인연합회의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 영업점포수는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기준

6 신청·선정 절차

-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은 이메일 송부(신청·접수 목록 전자문서 기재 필수)
- (절차) 전통시장 등(신청) → 시·군·구(검토)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7 우대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19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기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공동마케팅, 배송서비스, 상인교육, 시장활성화컨설팅, 시장매니저지원에 한함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최근 3년 내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단체)”을 수상한 곳

- 붙임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서
2.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협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5. 점포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지역별,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인교육(필수)**, 마케팅·경영자문·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이상 선택) 중 개수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한다.
 - * 상인연합회(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신청 가능
 - * 공동마케팅 선택 시 공동행사(가을축제 등)에 반드시 3일 이상 참여 필수
2.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선정 예정 등급별 바우처(국비) 금액(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에 맞춰 각 희망사업 부문별 예산 배분 및 계획을 수립한다.
3. 신청 전통시장 등은 상인의식 혁신, 상인조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전문교육 등의 상인교육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사업비 부문별 국비 지원 비율은 마케팅·교육·경영자문이 90%, 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는 70~30%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영업점포 수에 따른 국비 지원 비율 >

(단위 : 천원)

구 분	월급여 (100%)	영업점포 수 299개 이하		영업점포 수 300~799개		영업점포 수 800개 이상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국비 (30%)	지방비·자부담 (70%)
시장매니저	1,956	1,369	587	978	978	587	1,369
배송기사	2,080	1,456	624	1,040	1,040	624	1,456
클센터직원	1,820	1,274	546	910	910	546	1,274

- 1) 본 월 급여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지급
- 2) 2020년 월 급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조정(가감) 예정
- 3) 지방비를 미확보한 전통시장 등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모두를 자부담

< 지방비·자부담금 산출방법 예시 >

지방비·자부담율 예시	산출 방법
10%	바우처(국비) 12,000,000원 × 1 ÷ 9 = 1,340,000원
30%	바우처(국비) 12,000,000원 × 3 ÷ 7 = 5,143,000원

* 계산 시 천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 예) 1,333,333 ⇒ 1,340,000(O), 1,333,333 ⇒ 1,330,000(X)

5. 사업 부문별 계획서 작성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6.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시장으로 선정된 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문을 추가 할 수 없다. 단, 선택한 사업부분의 감액, 증액, 포기는 공단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7. [붙임1] 사업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을 기입한 상인회장과 실무자는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각각 작성한다.

【붙임 1】 시장경영마우처지원사업 신청서

시장경영마우처지원사업 신청서

시장정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소재지					
상인회 (상인연합회) 정보	상인회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화			팩스		
	상인회장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실무자명		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자메일	
지자체 정보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전화			팩스		
신청 내용	희망 사업 부분 *해당 부문 체크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경영자문 <input type="checkbox"/> 시장매니저 <input type="checkbox"/> 배송서비스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2020년 시장경영마우처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상인회장 _____(인) () 시·군·구 단체장 _____(인)						
위와 같이 『2020년 시장경영마우처지원사업』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_____(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시장경영마우처지원사업 계획서 ②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③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사업비(지방비) 부담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⑤ 점포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1부						

【붙임 2】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계획서

시장명	(반드시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기재된 공식 명칭 기입)
------------	--------------------------------

□ 신청개요

희망 사업 부문 <small>*해당 부문 체크</small>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경영자문 <input type="checkbox"/> 시장매니저 <input type="checkbox"/> 배송서비스
---	--

예산 배분 <small>*천원 단위 작성</small>	사업 부문	바우처(국비)	지방비	자부담
	마케팅	천원	천원	천원
	상인교육	천원	천원	천원
	경영자문	천원	천원	천원
	시장매니저	천원	천원	천원
	배송서비스	천원	천원	천원
	계	(A) 천원	(B) 천원	(C) 천원
총 사업 예산(A+B+C)		천원		

* 인력지원부문(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의 바우처 예산은 반드시 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 계획서 일반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의 필요성 (신청사유)	
상인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공동마케팅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상인회자부담 (B)	기타 ()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예산내역 (국비+자부담)	공동행사(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자체 마케팅	
		천원		천원
행사(축제)명	※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자체 마케팅을 모두 할 경우 구분하여 작성 1. 2.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작성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 및 각 사업별 소요예산(안)을 작성			
추진일정	※ 각 사업별로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을 작성			
자부담금 조성방안				

□ 상인교육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상인회자부담 (B)	기타 ()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산내역 (국비+자부담)	전문교육		상인대학	
	횟수	예산	횟수	예산
	회	천원	회	천원
교육환경	교육장소	명칭:	면적(m ²)	수용인원(명)
			시장으로부터 거리	m
		없는 경우 확보대책		
교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책상()개, <input type="checkbox"/> 의자()개, <input type="checkbox"/> 음향시설(마이크 등)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스크린, <input type="checkbox"/> 냉방시설			
신청사유	※ 우리 시장(상권)이 왜 이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중점교육 희망내용	※ 수강희망 교육내용을 기술			
예상 추진일정	교육시작일	주당교육일수(요일)	교육희망시간	
	월 일 부터	회, ()요일	시부터(오전, 오후)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 활성화 효과 기재			
자부담금 조성방안				

□ 경영자문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상인회자부담 (B)	기타 ()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 - -			
자문사유 (필요성)	※ 우리 시장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 - -			
사업규모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			
추진일정	※ 추진 단계별 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 활성화 효과 기재			

□ **배송서비스**

※ 희망사업으로 선택한 부문만 작성하며, 가급적 1쪽 분량으로 작성

인력운영계획	배송기사	명	콜센터직원	명
사업비 사용 계획	바우처(국비) (A)	지방비 (B)	자부담 (C)	총 사업비 (D=A+B+C)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 동 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사업추진계획	※ 배송서비스 운영방안, 지원인력 활용방안, 홍보방안 등 상세히 기술			
배송인프라 시설현황	※ 콜센터 직원 근무처의 환경 및 기자재 유무, 배송기사가 사용할 배송 오토바이, 차량의 수, 크기 등을 상세히 기재			
배송 실적 목표 설정 및 노력	※ 배송실적 목표를 월 00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			
자부담금 조성방안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_____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시장경영마우처지원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를 해당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기초 지자체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 외부전문회계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인)

【붙임 5】 점포 명부 및 우대조건 확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명	점포 수	제로페이 가입점포 수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수
	개	개	개	개	개 (상점가만 작성)

- ▶ 본 명부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 발견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조사 항목 중 평가 우대조건을 미충족한다고 판단시 해당 항목은 미기입 가능합니다.
 * 우대조건 : 제로페이,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화재감지기(상점가) 각 50% 이상

순번	점포명	대표자	제로페이 가입여부	화재공제 가입여부	민간화재 보험 가입여부	화재감지기 설치여부 (상점가만 해당)
1			O / X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1 지원 개요

- (지원규모)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이하 '지회') 3곳을 우선 선정하고, '20년 예산 규모에 따라 후보지역 순위에 의거 추가 선정
- (사업기간) '20. 1월 ~ '20. 12월까지
 - * 지원예산, 지원규모, 사업기간은 '20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지원한도)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 상기 예산은 '20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조건) 지방비·자부담 매칭*
 - * 전체 사업비의 국비 70% 이하, 지방비·자부담 30% 이상 충족
 - 지역내 전통시장 15곳 이상 참여(단, 제주는 시장 5곳 이상)
-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3 지원내용

-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무대 및 장비 설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

4 신청·선정 절차

○ **(신청)** 시·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 첨부파일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은 이메일 송부(신청·접수 목록 전자문서 기재 필수)

○ **(절차)** 지회(신청) → 시·도(추천) → 공단(접수) → 중기부(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 전국상인연합회(운영)

- 붙임 1.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4. 지방비투자 협약서 1부

【붙임 1】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 회 정 보	지 회 장 명		지회개설일	___년___월___일	
	소 재 지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요망			
	전 화		팩 스		
	지회장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실무자핸드폰	※ 반드시 기재	전 자 메 일		
지 자 체 정 보	담당부서명		담 당 자 명		
	전 화		팩 스		
개최시기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개최장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확인 사항	채무 불이행 *해당 부문 체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여부(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2020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상인연합회장 _____(인)					
위와 같이 『2020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지회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 시·도 단체장 _____(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제출서류 ①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지방비 투자확약서 1부					

【붙임 2】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신청서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계획서

지회명	
------------	--

□ 신청개요

행사명칭	예) "제0회 00지역상품전시회"			
행사시기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행사장소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 예산		천원		

□ 계획서 일반

사업목적	
지회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 세부계획

<p>전시관 구성 계획</p>	<p>* 전시관 구성 및 배치 계획 등 기술</p>
<p>전시상품 선정계획</p>	<p>* 전시상품의 조달 및 선정 계획 등 기술</p>
<p>전시관 운영프로그램</p>	<p>* 전시행사, 부대행사, 이벤트공연 등 운영 프로그램 기술</p>
<p>전시상품 판매계획</p>	<p>* 전시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계획 등 기술</p>

<p>관람객 유치계획</p>																										
<p>홍보계획</p>																										
<p>사업비 산출내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92 1335 1406 1581"> <thead> <tr> <th>구 분</th> <th>산출내역</th> <th>단가</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작성방법> * 기획료, 행사비, 제작비, 인건비, 홍보비, 인쇄비, 장치비, 운영경비 등 항목 구분 작성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정산시 명확한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갖출 수 있어야 함</p>	구 분	산출내역	단가	금액	비고																계				
구 분	산출내역	단가	금액	비고																						
계																										

<p>유사사업 실적</p>	<p>* 지역상품전시회와 유사한 사업 실적 기술</p>
<p>추진일정</p>	
<p>자부담금 조성방안</p>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2020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외부전문회계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운영 및 정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2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0년도 지역상품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인)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_____시(도)는 _____지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역상
품전시회 지원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
담 사업비 _____원을 해당연도에 이상 없
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광역시·도명)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3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사업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3곳 내외 (신규 2곳 내외, 계속 1곳)

2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3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광역권역 내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 특성화 상위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2곳 이상인 경우
 - * '20년도 신청 가능지역 :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경남, 전남 등 7곳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서울형신시장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신청일 기준)

*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19년도에 3년차 문화관광형시장('17년 선정)과 2년차 문화관광형시장('18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지원사업이 정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 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

5 주요 지원내용

-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콘텐츠 개발
- 사후면세점, 간편결제, 관광통역 안내 등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
- 작은 도서관, 공공어린이집, 도시락카페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공유경제 프로그램 추진
- 다른 시장 또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형 수익모델 개발 및 추진 등

6 지원조건

- 시장 당 2년 간, 최대 2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7 신청·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8 우대조건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공고일 기준)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공고일 기준)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신청일 기준)
 - * 민영화재보험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재보험증권번호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업점포에 한해 인정 [→붙임7 증빙必]
- 전체 상인 중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 [→붙임9 증빙必]
- 최종 선정 시, 상인회 또는 기초지자체가 육성사업단(2~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유상임대 시 사업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거래 불가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10 증빙必]

4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86곳 내외 (신규 44곳* 내외, 계속 42곳)

* '19년 첫걸음(기반조성)→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도 포함

2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3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서울형신시장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신청일 기준)
 - *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 *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19년도에 3년차 문화관광형시장('17년 선정)과 2년차 문화관광형시장('18년 선정)은 공고일 기준 지원사업이 정상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 기존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진척률 등을 감안할 때 협약기한 내 사업 완료 및 목표달성이 가능하고, 연속사업이 차별성, 발전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정 예정

5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의 디자인 재생(복합문화 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 사업 일체

6 지원조건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7 신청·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8 우대조건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공고일 기준)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공고일 기준)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신청일 기준)
 - * 민영화재보험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재보험증권번호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업점포에 한해 인정 [→붙임7 증빙必]
- 전체 상인 중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 [→붙임9 증빙必]
- 최종 선정 시, 상인회 또는 기초지자체가 육성사업단(2~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유상임대 시 사업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계약 불가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10 증빙必]

5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총 30곳 내외

2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0. 12월(1년)

* 단,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우수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으로 연속지원

3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자격

-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신청일 기준)

- ① 상인회 가입률 70% 이상
- ② 상인회비 납부율 70% 이상
-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신청자격 참고사항

- '19년도에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지원대상인 곳은 신청 가능

5 지원내용

-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중점 수행
 - * 3대 서비스 혁신 : ① 편리한 지불·결제, ② 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 위생 및 청결
 - * 2대 조직역량 강화 : ① 상인조직 역량강화, ② 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도약 준비

6 지원조건

- 1년 간, 최대 3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7 신청·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다를 수 있음

8 우대조건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공고일 기준)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공고일 기준)
- 전체 상인 중 화재공제 및 민영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경우(신청일 기준)
 - * 민영화재보험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재보험증권번호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영업점포에 한해 인정 [→붙임7 증빙必]
- 전체 상인 중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 [→붙임9 증빙必]
- 최종 선정 시, 상인회 또는 기초지자체가 육성사업단(2~5명)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유상임대 시 사업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계약 불가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10 증빙必]

6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20곳 내외

2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0. 12월(6개월)

3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향후 특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강하지만 상인회 역량, 조직력 등 기반이 열악하여 기초컨설팅이 필요한 곳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첫걸음 컨설팅사업 등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내용

-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분석·진단 → 개선방안 도출 →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 컨설팅
- 5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전략
- 특성화 첫걸음시장 → 문화관광형 등 특성화사업 고도화 방안 등

5 지원조건

- 최대 6개월 간, 15백만원 이내(국비 100%)

6 신청 · 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기초지자체→소진공)
 - * **[붙임1] 지원신청서 및 [붙임3] 컨설팅사업 계획서만 첨부하여 제출**
 -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 우선 발송 후 붙임자료는 **소진공 담당자 메일(market@semas.or.kr)로 제출**
- (절차) 전통시장 → 시·군·구(신청) → 소진공(접수) → 중기부(최종선정)
※ 타 특성화사업과 달리,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거칠 필요 없이 소진공으로 직접 신청
-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 확정예산 규모에 따라 예비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7 신청 시 주의사항

- **'19. 07. 24(수)부터** 소진공의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지원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접수된 순대로 지원
 - * '19. 07. 24(수) 이전에 공문 발송한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 규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각 기초지자체 당 **2곳 이내로 추천 제한**

- 붙임
1. 지원신청서
 2. 프로젝트 계획서
 3.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추진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투자확약서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예시)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8.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9. 제로페이 가맹점포 현황
 10.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11.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2020년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신청 유형 : _____)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중 택1

시장명 :	
-------	--

2019.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2020년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작성 원칙
 - 한글 파일(hwp)과 PDF 파일(또는 스캔화일)을 동시에 제출
 - 제시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임의로 양식변경 지양
 - 용지여백 설정 : 위쪽10,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 파일명(예)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_대전 중구_000시장.pdf
 - 제출 방법
 -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는 '온나라 전자결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붙임파일 용량이 커서 전자결재 첨부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기관 담당자 e-메일로 별도 송부 가능
 - 전자결재 및 e-메일 송부 후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책자제본** 후 5부를 인쇄하여 지방청에 제출(붙임서류 사본 가능)
- 단,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신청시장은 책자제본 제출 불필요

< [참고] 특성화사업 유형별 제출해야하는 붙임 서류 >

사업유형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프로젝트 계획서)	붙임3 (첫걸음 컨설팅 추진계획서)	붙임4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5 (지방비 투자확약서)	붙임6 (상생협약서)	붙임7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붙임8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점포)	붙임9 (제로페이 가맹점포현황)	붙임10 (화재감지기 설치점포현황)
희망프로젝트 지역선도형	○	○	X	○	○	○	○ (필요시)	○ (필요시)	○ (필요시)	○ (설치율이 50%이상인 상점가만해당)
희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	○	X	○	○	○	○ (필요시)	○ (필요시)	○ (필요시)	○ (설치율이 50%이상인 상점가만해당)
첫걸음 기반조성	○	○	X	○	○	X	○ (필요시)	○ (필요시)	○ (필요시)	○ (설치율이 50%이상인 상점가만해당)
첫걸음 컨설팅	○	X	○	○	X	X	X	X	X	X

2.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방법

- 계획서는 해당양식을 준수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30장 이내로 작성**(붙임서류 미포함)
 - 자료산정(data)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 목차 및 페이지(page) 반드시 기재
 - 문체는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량적·계량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
→ 제출서류 중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첨부자료 별첨
-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I

시장 일반현황 및 5대과제 수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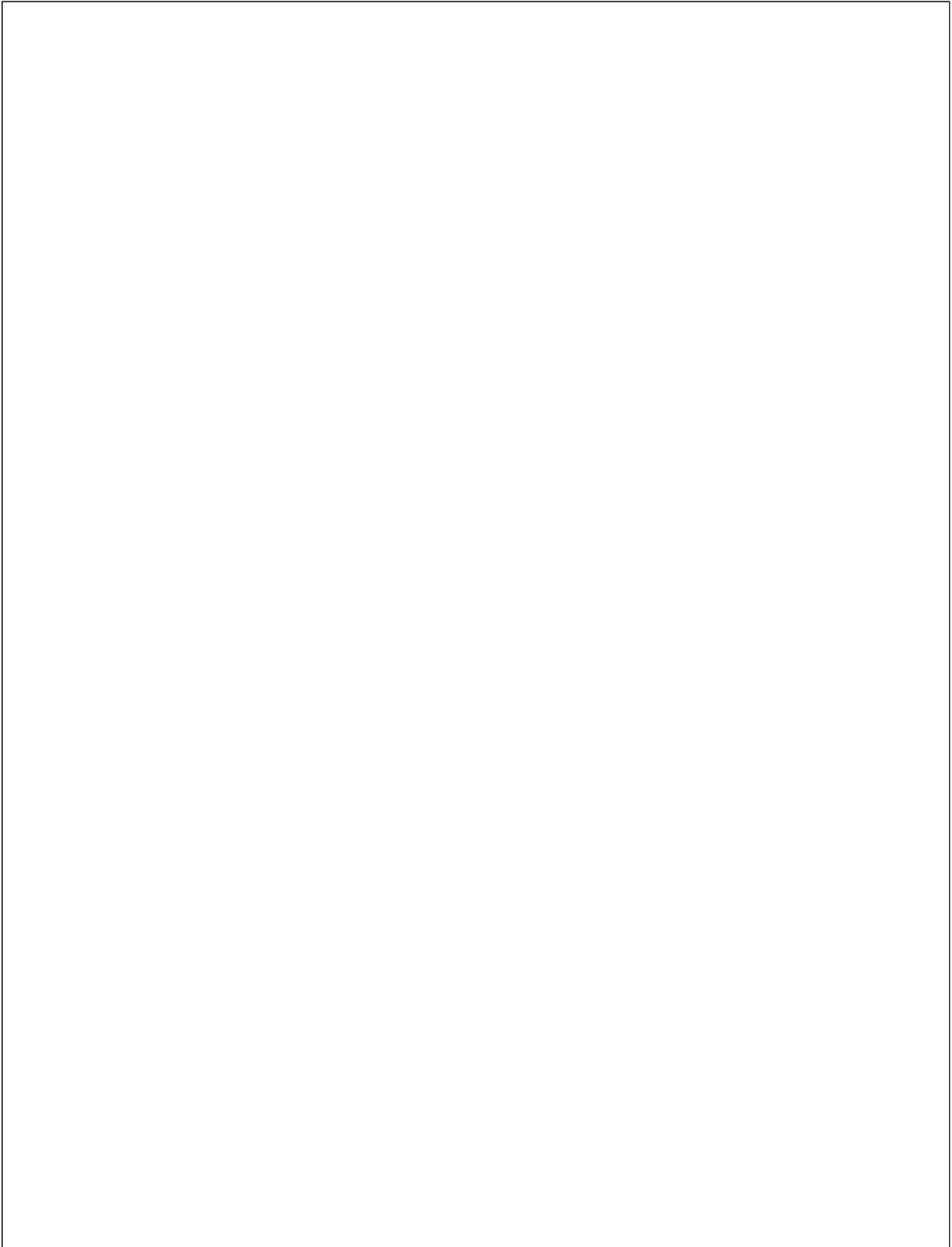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 장 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 설 일	등록/인정일					
시 장 유 형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상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건물형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지하상가 <input type="checkbox"/> 도매(형)시장 <input type="checkbox"/> 5일장(장날 : ,)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개 설 주 체	<input type="checkbox"/> 법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개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공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인회	점포 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개, 빈점포 ()개 총 노점()개 = 상인회 가입노점 ()개 + 미가입노점 ()개				
	가 입 률	총 점포 ¹⁾ ()개 중 가입 점포 ²⁾ ()개 = 가입률()% 1) '점포현황' 란의 상설 영업점포+총노점 수 2) 상인회 가입 영업점포+가입노점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년 ②납부금 (원/회) ③회원 ()명 중 ()명 납부 * 납부율 =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 맹 률	구 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붙임8]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점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제 로 페 이 가 맹 률	상설 영업점포 ³⁾ (노점, 빈점포 제외) ()개 중, 가입 점포 ⁴⁾ ()개 = 가입률()% 3) '점포현황' 란의 상설 영업점포와 동일 4) [붙임9] 제로페이 가맹점포 목록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현장평가 시 무작위 검증)					
경영 현황	시장일평균 매 출 액	'16년(만원/일) → '17년(만원/일) → '18년(만원/일)				
	시장일평균 고 객 수	'16년(명/일) → '17년(명/일) → '18년(명/일)				
사업단 사무실 제 공 유 무	유 <input type="checkbox"/> (상세주소:)			무 <input type="checkbox"/>		
판 매 구 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심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심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 권 특 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2개 이상의 시장이 연합하여 신청할 경우 시장별로 작성

<첨부> 시장 지정도

- * 시장의 정확한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범위 표시(주요 끝 지점에 점포명 또는 건물명을 표기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표기)



* 예시 참고

<예시> 부천 역곡상상시장 지정도



* 상기 지정도는 예시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 5대 핵심과제 수준평가(평가항목)

→ 상인회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우리의 현재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세부점수 표기방법 >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5	4	3	2	1

< 자체 평가항목 및 배점 >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3대 서비스 혁신	편리한 지불 결제	신용카드 취급률	- 고객이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결제가 가능한가	
			-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지 않은가	
		현금영수증 발행률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한가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가	
			-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는가	
		온누리상품권 취급률	-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원할 경우,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 온누리상품권 취급 알림스티커는 정상적으로 붙어있는가			
	고객 신뢰	가격 표시율	- 점포 판매품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 POP 등의 방식으로 가격 장점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교환 및 환불 A/S 여부	- 고객의 교환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교환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고객의 환불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환불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친절 인사 여부	-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알림문구가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 판매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내의 A/S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위생 및 청결	공용화장실 청결 상태	-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맞이 인사를 하는가	
			- 고객이 점포를 떠날 때, 친절하게 배웅인사를 하는가	
			- 공용화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가	
		- 공용화장실의 청결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공용시설, 공간 청결 상태	- 시장 공용시설(주차장, 고객쉼터, 복합문화공간, 고객통로, 시장 입구, 안내 표지판 등)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고객선 준수 여부	- 고객선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 점포들은 고객선을 준수하고 있는가			
		깔끔한 상품 진열 상태	- 점포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가			
			- 진열상품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는가			
		점포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 점포 내부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 점포 외부의 간판, 매대 등은 깨끗한가			
			- 점포 주변에 쓰레기나 박스,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대 역량 강화	상인조직역량	상인회 가입률	- 시장 구역 내 점포들은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가	
				상인회비 납부율	-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은 상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가	
				정기 이사회(총회) 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이사회(또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소통하고 있는가	
- 이사회(또는 총회)를 운영하며 출석부 및 회의록 등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상인회 임원 조직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또는 변영회)는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상인회 임원들은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안전관리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였는가			
			-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는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취약시설 및 환경점검 여부		- 시장 내 취약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가			
			화재예방 훈련 실시 여부	- 지역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는가		
	-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예방 실전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화재예방훈련 시 상인들은 적극 참여하는가					
공용공간 소화기 비치 여부	- 시장 주요 공용지역에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1점포 1소화기 비치 여부	- 각 점포별 1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화재공제·보험 가입여부	- 상인들이 공단의 화재공제 또는 민영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3. 5대 핵심과제 수준 세부현황

□ 3대 서비스혁신 수준

- (편리한 지불결제)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고객 신뢰)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위생 및 청결)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2대 역량강화 수준

- (상인 조직역량)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안전 관리) *현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참고 사진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4. 기존 특성화사업 성과유지 및 사후관리 현황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사업 신청시장만 작성)

□ 기 지원 특성화사업 개요

기 지원사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형시장(문전성시사업 포함) <input type="checkbox"/> 골목형시장 <input type="checkbox"/> 상권활성화구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자체 추진 종합 지원사업 등
--------------	--

○ 선정년도 :

○ 사업기간 :

○ 주요 사업내용

-

-

○ 주요 성과

-

-

-

○ 추진 간 어려웠던 점

-

-

□ 기존 사업의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 현황

○ 현재 유지·관리 상태(자체평가)

-

-

○ 그간 성과유지를 위한 노력

-

-

-

-

○ 성과유지 관련 주요 이슈사항

-

-

○ 사업 종료 후 매출 및 고객수의 증감 유무(정량수치 포함)

-

-

II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1. 시장의 특성(강점)

기반 인프라 현황

○ 편의시설 현황

* 아케이드, 화장실, 주차장, 고객센터, 관광안내소, 교육장, 소방시설 등 현황

○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현재 활용중인 공간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빈점포 등) 등에 대해 위치와 활용방안 기술 - 예시) 실내·외 무대, 공연장, 이벤트 광장 등

시장 특화요소

* 시장 특화상품 및 콘텐츠, 차별화 서비스,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사업 추진 등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콘셉트 도출 관련 특장점 기술

○

○

상권환경 매력도

* 시장 주변 집객요소의 매력도, 반경 1km이내 상권의 인구수 등 기술

○

○

2. 사업추진 체계도

핵심 프로젝트 (테마)	
--------------------	--



기본 계획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 ○ (2년차) - - <p>* 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2년차 작성 불요</p>



사업 추진방향	
------------	--

	(단위사업1)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세부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성과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3. 프로젝트 세부추진전략

< 작성 시 참고사항 >

- 희망사업 프로젝트 : 시장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색 육성사업 일체(세부 사업은 시장별 프로젝트 주제와 연계된 3~5개 사업으로 구성), 5대 핵심과제(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강화) 강화를 위한 활동 포함
 - * (지원제외) 개별점포 직접지원, 연속성이 없는 행사(1회성), 건물주 및 상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동의율50%미만), 사행성 시설 등
-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 5대 핵심과제(3대 서비스혁신, 2대 역량 강화) 향상을 위한 수행 전략 중심

< 특성화사업별 핵심 추진방향 >

- (지역선도형)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촉진, 전통시장-민간 협업을 통한 수익형 상생협력사업, 세대융합형 프로젝트(문화·교육, 복지, 창업 등 지역 커뮤니티 기여), 상품·서비스 품질 관리 등 지역대표 거점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 (문화관광형) 문화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지역 사회 협업사업 등 시장의 특화요소 및 강점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
- (첫걸음시장) 3대 서비스 혁신 및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전통시장 근본적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회 주도형 사업 추진

(단위사업 1)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단위사업 2)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단위사업 3)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단위사업 4)

- (세부과업1)
- (세부과업2)

Ⅲ

사업관리 계획

1. 상인회의 주도적 사업추진

상인회와 사업단의 협업체계

** 상인회 구성 중 분과 활용안, 역할 구분, 조직도 편성, 회의 및 소통 방안 등 구체화*

○

○

일반상인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방안

** 시장 상인들의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자발적 사업추진 의지 제고 활동 기술*

○

○

2. 지자체의 사업지원 계획

지방비 확보 방안

** 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시기, 확보가능 금액)*

○

○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계획

** 사업신청 부서(경제과)와 관련 부서(관광정책과, 시설과, 건축과 등)간 부서별 지원계획 기술(영업허가, 소방, 상하수도, 건물 안전 등)*

○

○

3. 사업 성과유지 및 확산방안

* 지원 사업예산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병행 계획, 상인자생력 강화, 성과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행사지원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4. 사업 및 시장 홍보방안

* 사업 전·후 및 진행기간 동안 일반상인과 방문고객, 지역민 등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시장 방문객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방안, 보도자료 작성·배포 횟수, 귀빈 초청 행사 등 구체적 추진방안 기술

5. 향후 성과 사후관리방안

* 사업종료 후, 모든 성과물이 지자체의 소유로 이관됨에 따라 성과를 지속 유지하고, 후속관리 할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 기술

IV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안)

< 특성화사업별 예산편성 기준 >

- 지역선도형 : 2년 간 최대 20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문화관광형 : 2년 간 최대 10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35% 이내)
- 첫걸음시장(기반조성) : 1년 간 최대 3억원(간접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

* 지원시장 최종확정 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시장규모(점포수)별 지원예산이 한도 이내에서 차등화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예산(안) 수립 시에는 사업유형에 따른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추후, 시장별 최종 지원금액 확정 시 해당 금액에 맞춰 재조정 예정

사업 총 예산 : _____ 천원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산출내역	금액	비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합 계						

* 사업유형 별 간접비 최대한도는 상기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산출

V

기대 효과

(핵심 프로젝트 성과)

*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시장만의 뚜렷한 차별화 요소를 기술

○

○

(주요 정량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량적 성과 기술

○ 시장 전체 매출액 증가율 : 00%

○ 시장 전체 방문 고객수 증가율 : 00%

○ 방문고객의 해당시장에 대한 만족도 : 00%

○ 해당시장 특화요소 고객인지도 개선률 : 00%

○ 3대 서비스혁신 과제 개선율 : 00%

○ 2대 역량강화 과제 개선율 : 00%

정성적 성과

* 사업을 통한 정성적 성과 기술(구체적 결제 편의성 증대, 시장 이미지 개선 등)

○

*

○

*

2020년도 첫걸음 컨설팅사업 신청시장 현황보고서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신청시장만 작성

시장명 :

2019. .

상 인 회 : (직인)

기초지자체 : (직인)

1. 시장 일반현황 및 상권특성

시 장 명		*전통시장 인정서 등에 명기된 정확한 시장명 표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소재지																	
개설일		등록/인정일															
시장유형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상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건물형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지하상가 <input type="checkbox"/> 도매(형)시장 <input type="checkbox"/> 5일장(장날 : ,)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개설주체		<input type="checkbox"/> 법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개인시장 <input type="checkbox"/> 공설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인회	점포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개, 빈점포 ()개 총 노점()개 = 상인회 가입노점 ()개 + 미가입노점 ()개															
	가입률	총 점포 ¹⁾ ()개 중 가입 점포 ²⁾ ()개 = 가입률()% 1) '점포현황' 란의 상설 영업점포+총노점 수 2) 상인회 가입 영업점포+가입노점															
	회비납부율	①납부단위 :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년 ②납부금 (원/회) ③회원 ()명 중 ()명 납부 * 납부율 = ()% *공고 게시일 기준 가장 최근 값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①총 점포수</th> <th>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th> <th>③가맹가능 점포수</th> <th>④실제 가맹점포 수</th> <th>⑤가맹률 (%)</th> </tr> </thead> <tbody> <tr> <td>값</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① 영업점포+노점 수 ② [붙임8] 등록제한점포 현황자료에서 확인되는 값과 같아야 함 ③ 가맹가능 점포 수 = ①총 점포수 - ②가맹제한업종 점포 수 ④ 실제 가맹점포 수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설영업점포 + 노점 수 ⑤ 가맹률 = ④실제 가맹점포 수 / ③가맹가능점포수 * 100				구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구분	①총 점포수	②가맹제한업종 점포수	③가맹가능 점포수	④실제 가맹점포 수	⑤가맹률 (%)												
값																	
경영 현황	시장일평균 매출액	'16년(만원/일) → '17년(만원/일) → '18년(만원/일)															
	시장일평균 고객수	'16년(명/일) → '17년(명/일) → '18년(명/일)															
판매구성		※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핵심포(유명점포) * 판매 비중 : (예) 농산물 - 수산물 - 음식점 순 * 핵심포(유명점포) : (예) 칼국수집, 분식집 등															
상권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2. 5대 핵심과제 수준평가(평가항목)

→ 상인회 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관련, 우리의 현재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세부점수 표기방법 >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 점수	5	4	3	2	1

< 자체 평가항목 및 배점 >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3대 서비스 혁신	편리한 지불 결제	신용카드 취급률	- 고객이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결제가 가능한가	
			-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금액이 다르지 않은가	
		현금영수증 발행률	-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을 때,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한가	
			-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가	
			-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는가	
		온누리상품권 취급률	-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원할 경우, 어떠한 문제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 온누리상품권 취급 알림스티커는 정상적으로 붙어있는가			
	고객 신뢰	가격 표시율	- 점포 판매품에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 POP 등의 방식으로 가격 장점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교환 및 환불 A/S 여부	- 점포의 판매품에 원산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는가 (* 원산지 표기 의무품목에 한함)	
			- 고객이 교환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교환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친절 인사 여부	- 고객이 환불을 희망 시 어떠한 문제없이 가능한가 (*환불 불가 품목 및 사유는 제외)		
		-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알림문구가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는가		
	위생 및 청결	공용화장실 청결 상태	- 판매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내의 A/S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맞이 인사를 하는가	
			- 고객이 점포를 떠날 때, 친절하게 배웅인사를 하는가	
		- 공용화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가		
		- 공용화장실의 청결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세부 점수		
구분	실천 과제	수준 지표				
		공용시설, 공간 청결 상태	- 시장 공용시설(주차장, 고객쉼터, 복합문화공간, 고객통로, 시장 입구, 안내 표지판 등)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고객선 준수 여부	- 고객선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 점포들은 고객선을 준수하고 있는가			
		깔끔한 상품 진열 상태	- 점포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가			
			- 진열상품에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는가			
		점포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 점포 내부는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가			
			- 점포 외부의 간판, 매대 등은 깨끗한가			
			- 점포 주변에 쓰레기나 박스,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2대 역량 강화	상인조직역량	상인회 가입률	- 시장 구역 내 점포들은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는가	
				상인회비 납부율	-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들은 상인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가	
				정기 이사회(총회) 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이사회(또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소통하고 있는가	
- 이사회(또는 총회)를 운영하며 출석부 및 회의록 등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상인회 임원 조직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또는 변영회)는 상인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상인회 임원들은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안전관리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여부		- 상인회는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였는가			
			- 의용소방대(또는 자율소방대)는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취약시설 및 환경점검 여부		- 시장 내 취약시설 및 환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가			
	화재예방 훈련 실시 여부		- 지역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는가			
			-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예방 실전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화재예방훈련 시 상인들은 적극 참여하는가			
공용공간 소화기 비치 여부	- 시장 주요 공용지역에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1점포 1소화기 비치 여부	- 각 점포별 1개 이상의 사용가능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화재공제·보험 가입여부	- 상인들이 공단의 화재공제 또는 민영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 기관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상인회장]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상인회 실무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	5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인회 실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지방비 투자확약서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_____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
하는 2020년도 특성화시장(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시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50%(±10%)를 해당
연도에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_____사도지사 : (직인)

_____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6】 상생협약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

사업 유형 (V)표기	<input type="checkbox"/>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input type="checkbox"/>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시장명 (또는 상점가명)	
-------------------	--	------------------	--

전통시장(또는 상점가)의 임대인과 임차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상인(상인회)이 재계약을 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5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상인(상인회)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4. 임대인, 임차상인(상인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율 : ()%

임대차 계약 총()건 中 ()건 합의

* 자가 운영 점포를 제외한 개별 임차 점포에 한함

* 동일 임차인의 다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건수 전부 합산

2019. ____ . ____ .

임대인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임차인 대표 (상인회 대표)
(소속) _____	(단체명) _____	(소속) _____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첨부.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00부

상가별 5년 간 임대료 조정 합의서

시장명 (또는 상점가명)	점포명
주 소	

상기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5년 간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만 5년간, 임차상인(상인회)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및 거리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임대인,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소통에 힘쓰며, 항상 협력의 자세로 임한다.

(5년 간) 매년 최대 임대료 조정 한도 비율	
<input type="checkbox"/> 동결	<input type="checkbox"/> (%) 이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9. ____ . ____ .

임대인 _____ (인)	임차인 _____ (인)
-------------------------	-------------------------

* 합의서는 자가 소유의 점포는 제외하고 임대 점포에만 한함

【붙임 7】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_____ 개
----------	---------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8】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총 제한업종 점포수	_____ 개
------------	---------

순번	점포명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기준)	상인회 가입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참고>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제한업종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2호 관련)
46102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법무
712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익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비고 :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9】 제로페이 가맹점포 현황

순번	점포명	대표자	제로페이 가맹여부 (O/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붙임 11】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19.06.24 기준)

지방청	부서	담당자	직책	e-mail (@korea.kr)	연락처
서울	소상공인과	주무관	임종영	bellyoung80	02-2110-6343
부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재범	binugaru83	051-601-5139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주무관	송대근	kukki0	053-659-2228
경북북부 사무소	-	주무관	장주현	jjh874	054-859-8161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차경미	forpeople	062-360-9153
전남동부 사무소	-	주무관	이종균	tlgo73	061-727-5711
경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광태	gtkim2006	031-201-6933
경기북부 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주무관	이슬기	lsk1719	031-820-9014
인천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이동현	chaesr38	032-450-1140
대전충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심정희	shimany2	042-865-6109
충남 사무소	-	주무관	김홍길	hkkim11	041-564-3859
울산	지역혁신과	주무관	안희원	expertwon	052-210-0045
강원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선영	syoung0316	033-260-1624
강원영동 사무소	-	주무관	오홍기	ohk225	033-655-4146
충북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현우	kinder0105	043-230-5311
전북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이세종	bepratingu	063-210-6432
경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허세명	baruna	055-268-2549

* 인사발령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발송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2곳 내외

2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1. 12월

3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희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미등록 상점가의 경우 지자체가 청년몰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
 - 복합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은 별도 추진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시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자격

-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
 - * 단, 음식업종을 포함할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우수처리 등이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을 것
- ② 신축인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 ③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5 지원내용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카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기준

-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임차료) 3.3㎡당 월 110천원 한도, 최대 33㎡, 24개월까지만 지원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하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인테리어) 3.3㎡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사업단을 통해 용역대행 업체에 지급)

6 지원한도 및 조건

○ (한도) 몰 당 3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청년몰 규모별 지원금 예시

- ① 소형(기본형) : 지역 중소도시, 청년상인 10명, 사업비 10억원 이내
- ② 중형(복합형) : 청년점포 20곳,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20억원 이내
- ③ 대형(복합형) : 청년점포 30곳 이상,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30억 이내

○ (조건)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

- 총 점포 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오픈인큐베이터' 또는 '공용공간(휴게실, 공동제조시설, 창고 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함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

7 신청 · 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 (예비창업자)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8 우대조건

-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 기간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 ②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 ③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 운영(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 ④ 청년몰 내의 핵심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시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경우(공고 게시일 기준)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2.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협약서
 4. 상생협약서
 5.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9.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10.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1.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20 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I

청년몰 조성 개요

□ 시장 일반현황

시장 입지	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시장 형태	도매시장 <input type="checkbox"/> 소매시장 <input type="checkbox"/> 전문시장(품목_____) <input type="checkbox"/>
상인 분포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업종 분포	도소매 ()%, 음식 ()%, 서비스 ()%, 제조 ()%, 기타_____()%
점포 소유	총 ()명 중 : 자가 소유 ()명, 임대 ()명, 기타_____()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대표 상품	① ② ③
경쟁 점포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조성 개요

기본 사항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____m ² __개) <input type="checkbox"/> 개별상점 집합(500m ² 반경__개) <input type="checkbox"/> 신축(____m ² __개) <input type="checkbox"/>		
	층별 분포	총 점포 ()개 = 지하층()개 + 1층()개 + 2층()개 + 3층 이상()개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특화 전략	전략 업종 (선택이유)	청년상인 창업수요	예비 청년상인 ()명 *수요조사서 첨부	
	중점 고객층 (선택이유)	청년몰 전후 고객 수	1일 ()명 → ()명 *수요조사서 첨부	
	기존상인과 차별화 계획	* 기존상인과의 업종, 구역, 영업시간 중복 등에 의한 갈등 방지대책 등		
상인 동의	사업추진 동의	총()명 중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청년몰 조성 예정지 도면

* 시장 주변도로를 포함
전체 시장형태와 청년몰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 제시

독립형 건물인 경우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m ²), 건물(m ²)
건축물 대장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지하(층, ___점포), 지상(층, ___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input type="checkbox"/> , 법인 <input type="checkbox"/> ,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년) <input type="checkbox"/> ② 임대료 : 월 ()원 = 임대료동결 (년), 이후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input type="checkbox"/>		

신축인 경우

완공 예정일	년	건물규모	대지(m ²), 건물(m ²)
시행자			지하(층, ___점포), 지상(층, ___점포)
부대 시설 조성 계획			
청년상인 점포 분양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년) <input type="checkbox"/> ② 임대료 : 월 ()원 = 임대료동결 (년), 이후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II

청년몰 조성계획

사업 목표

○

특화 전략

① 청년몰 컨셉,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육성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 청년몰 배치도

(청년몰 조성공간 평면도 및 점포별 전략업종 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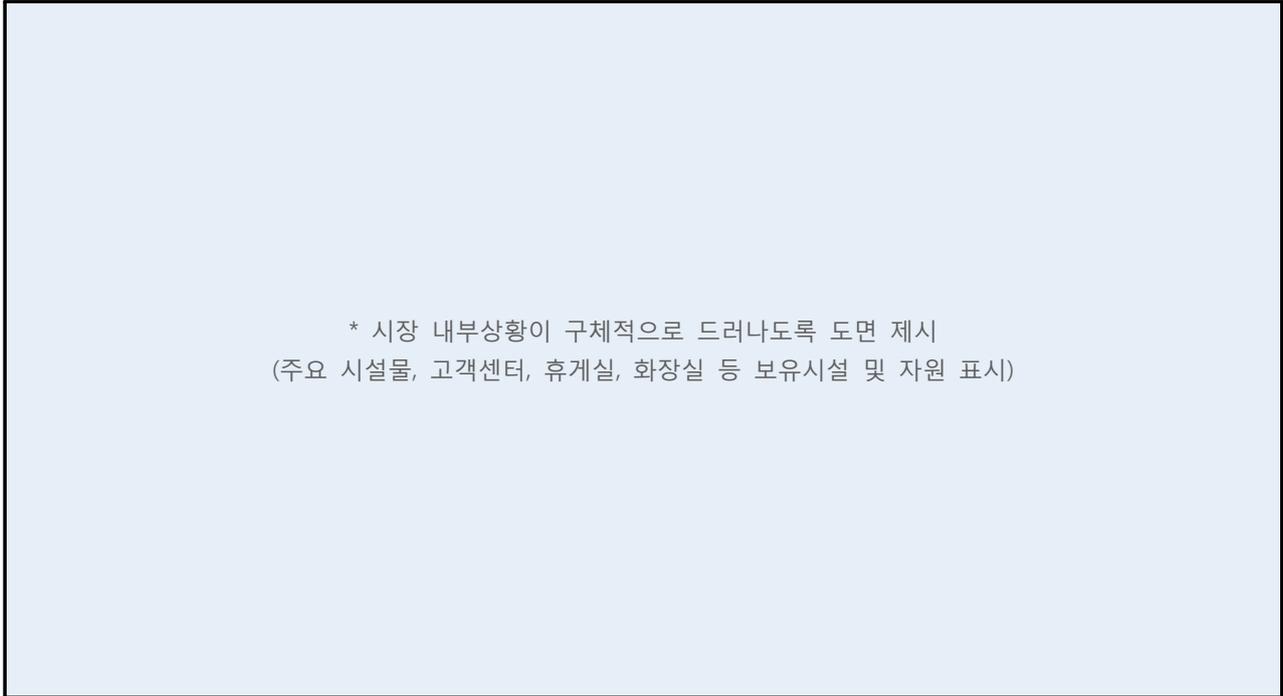
-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 경쟁업종 극복 전략
- 전략업종 청년상인 창업수요 현황(수요조사서 첨부)
-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② 고객 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 상권 분석
-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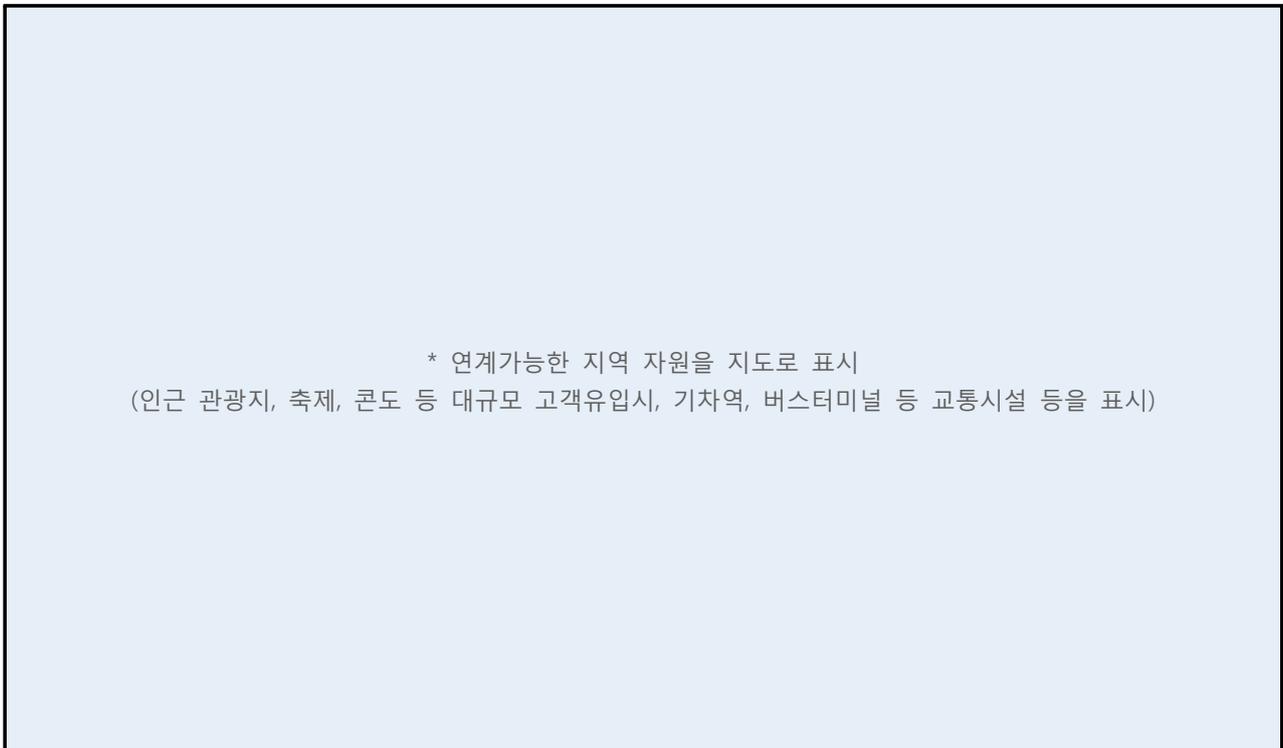
③ 시장의 자체 보유자원 맵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④ 청년몰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자원 맵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⑤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사업비 : 총 _____ 백만원

* 국비 _____ 백만원, 지방비 _____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_____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화장실 개보수 : 000원 -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컨설팅 멘토링 등 - 컨설팅 : - 멘토링 : -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플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기타 청년상인 육성 사업 :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 직원 : 000원 = 0명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이며 단장1인, 단원2인으로 편성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기술

- ①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 ② 그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각 사업별)
- ③ 청년몰 조성 공간 확보 방안
- ④ 청년상인 모집 방안
- ⑤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 ⑥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 ⑦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상인회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시장 내 기존 상인들이 보유한 역량 및 청년상인 지원방안을 기술

- ① 상인조직 현황
- ② 청년상인과의 상생방안(협업사업 등)
- ③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IV

청년몰 조성 후 유지관리 계획

□ 청년몰 조성완료 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 ① 폐업 방지대책
-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계획(해당시)

- ① 기본원칙
- ② 자치규약 등 운영방안
- ③ 성과평가 및 선발체계
- ④ 운영체계 및 채용 조달방안 등

지방비 투자 협약서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_ %를 투자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시·도지사 : (직인)

_____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_____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등 ()명은 ___시(도) ___시 (군·구청)에서 추진하는 _____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_____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토지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등 ()명은 ___시(도) ___시 (군·구청)에서 추진하는 _____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토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2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3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4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5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6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7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8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9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10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11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12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13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14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15					-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_____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_____ 시장 상인 () 등 ()명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조성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주소 및 상호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비동의 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8】 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청년상인 입점 수요 조사서

※ 붙임의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후 결과 기재

시장명		
설문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일간)
	조사 장소	
	조사 대상	예, 00대학 창업동아리, 00문화센터 00강좌 수강생 등
	응답자 수	()명
조사결과	창업인식 조사 및 현황	
	창업 경험 (Q1-1)	있다()%, 없다()%
	관심도 (Q1-2)	1점(명) 2점(명) 3점(명) 4점(명) 5점(명)
	창업 의향 (Q1-3)	1점(명) 2점(명) 3점(명) 4점(명) 5점(명)
	창업 업종 (Q1-4)	외식업()%, 도·소매업()%, 제조업()%, 전문/지식서비스업()%, IT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문화컨텐츠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미용/뷰티서비스업()%, 기타_____ ()%
	전통시장 창업 관련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Q2-1)	1점(명) 2점(명) 3점(명) 4점(명) 5점(명)
	전통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2)	1점(명) 2점(명) 3점(명) 4점(명) 5점(명)
	우리 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3)	1점(명) 2점(명) 3점(명) 4점(명) 5점(명)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연령 (Q3-1)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 60대이상()%
응답자직업 (Q3-2)	회사원()%, 전업주부()%, 학생()%,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 기타_____ ()%	

【붙임 9】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청년상인의 입점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보호되므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1. 귀하의 창업관련 인식조사 및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이전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현재 창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3) 귀하는 향후에 창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4) 귀하가 희망 또는 준비하시는 창업아이템 및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외식업(각종 식당/레스토랑 등)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제조업 ④ 전문/지식서비스업
 ⑤ IT개발업 ⑥ 교육서비스업 ⑦ 문화컨텐츠업(출판/영상 등) ⑧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⑨ 부동산 및 임대업 ⑩ 미용/뷰티 서비스업 ⑪ 기타()

2. 다음은 귀하의 전통시장 창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 정책/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2)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귀하의 직업은? ()

- ① 회사원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자 ⑤ 예비창업자 ⑥ 기타()

- 귀한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붙임 10】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_____ 개
----------	---------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활성화, 확장 각각 5곳 내외

2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 12월

3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20개 이상의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지원 제외

- 공고 마감일 현재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시장. 단, 몰 당 지원한도가 남은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 예 : '18년 활성화2억·확장1억을 지원받은 경우, '19년 활성화1억·확장9억 가능
-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기준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60% 이상인 곳

※신청자격 참고사항

- '16~'17년 선정된 청년몰('18년말 이전 개장)은 상생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금번 신청일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18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

5 주요 지원내용

- (활성화)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시장 당 3억원)
 -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과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과제내용에 반드시 포함(이미 완료된 시장은 제외)
- (확장)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 예) 수도.전기.조명 등 기반시설 보강,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카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6 지원한도 및 조건

- 몰 당 최대 3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pm 10\%$ 차등지원
 -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7 신청·선정 절차

- (신청·접수) 전자결재 공문 접수(광역지자체→지방청)
 - * 직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붙임파일 일체는 책자제본 후 지방청으로 제출
 - * 붙임파일의 용량이 커서 공문에 첨부되지 않을 경우, 공문만 발송 후 붙임자료는 각 지방청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주소 붙임9 참고]
 - * 원본서류에 직인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의 경우 미접수 또는 평가 과정에서 '0'점 처리 될 수 있음
- (절차) 전통시장 및 시·군·구(신청) → 시·도(추천) → 지방청(접수) →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고객평가·현장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 (결과발표) 9월 경, 예비 선정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 후 국회 예산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발표·공지(19.12월 예정)

8 우대조건

- 일반 청년몰 → 창업보육형 청년몰로 전환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 기한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 ②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 ③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 운영(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 ④ 청년몰 내의 핵점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시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경우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경우(공고 게시일 기준)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공고일 기준)

-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 붙임 1.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붙임 1】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사업(중복신청가능)		<input type="checkbox"/> 활성화 지원		<input type="checkbox"/> 확장지원		
신청 시장 및 청년몰 현 황	시 장 명			청 년 몰 명		
	개 설 일			등 록/인정일		
	대 상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소 재 지					
	종 사 자 수	총 ()명 = 대표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청년상인포함				
	상 인 회	등 록 일			회 장 명	
		연 락 처			팩 스	이 메 일
		① 상인회 가입률()% = 전체 상인 ()명 중 ()명 가입 ②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명 중 납부()명 / 월회비()만원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전체 상인 ()명 중 ()명 가입				
	청 년 몰 현 황	개 점 일			청년대표명	
		연 락 처			이 메 일	
① 당초 조성점포 수 ()개, ② 현재 운영점포 수 ()개, ③ 대체상인 점포 수()개, ④ 빈점포 수 ()개 ⑤ 총 면적 ()m ² = 점포 ()m ² + 공용공간 ()m ²						
상 권 등 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사 업 예 산	총 사업비 ()백만원(국비 ____백만원, 지방비 ____백만원, 자부담 ____백만원)					
지자체 담당자	담 당 부 서			담 당 자 명		
	전 화			이 메 일		
<p align="center">※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의무조건 이행 약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p> ①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이후 자율조정협약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선정 우대사항 해당여부 : 공설시장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관리시장 <input type="checkbox"/> 점포매입 약약 <input type="checkbox"/> 신축여부 <input type="checkbox"/> ②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상인회장		(인)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시.도지사		(인)		
<p>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p>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투자 약약서 1부 3) 상생협약서 1부(사업추진 동의서 포함) 4)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부						

20 년도 청년몰 00지원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I

청년몰 현황 및 개요

□ 시장 일반현황(청년점포 포함)

시장 입지	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상업지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시장 형태	도매시장 <input type="checkbox"/> 소매시장 <input type="checkbox"/> 전문시장(품목) <input type="checkbox"/>
상인 분포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업종 분포	도소매 ()%, 음식 ()%, 서비스 ()%, 제조 ()%, 기타 ()%
점포 소유	총 ()명 중 : 자가 소유 ()명, 임대 ()명, 기타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스타 점포	① ② ③ * 예시 : 점포명/대표자명/주아이템/월평균매출액/월평균고객수
경쟁지 현황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주요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요약)

공통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m ² 개) <input type="checkbox"/> 개별상점 집합(500m ² 반경 개) <input type="checkbox"/> 신축(m ² 개) <input type="checkbox"/>		
	층별 분포	총 점포 ()개 = 지하층()개 + 1층()개 + 2층()개 + 3층 이상()개		
	중점 고객층		청년몰 전후 고객 수 변화	1일 ()명 → ()명
	사업추진 동의	총()명 중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활성화 지원	마케팅 계획			
	홍보계획			
	사인물 개선 계획			
	공동수익모델 발굴계획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확장 지원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 전략업종, 위치, 컨셉, 지원내용 등		
	타부처 및 민간 연계계획	* 도시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민간지원(노브랜드 물 등) 연계 계획		

청년몰 사진 및 도면

청년몰 사진	청년몰 도면

청년몰 건물(위치) 현황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m ²), 건물(m ²)
건축물 대장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지하(층, 점포), 지상(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input type="checkbox"/> , 법인 <input type="checkbox"/> ,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현재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년) <input type="checkbox"/> ② 임대료 : 월 ()원 = 임대료동결 (년), 이후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협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input type="checkbox"/>		

입점(예정) 점포 현황(추가 점포 조성의 경우)

순번	점포 주	동의 여부 (O, X)	연락처	면적(m ²)	층	계약조건		
						기간(년)	월임대료(원)	동결기간
1								
2								
3								
4								
5								
:								

컨셉 및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확장 및 활성화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 ①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 ②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 ③ 경쟁업종 극복 전략
- ④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상권 및 고객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 ① 상권 분석
- ②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 ③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시장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및 사진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연계가능 지역 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Ⅲ

활성화 및 확장전략

□ 사업 목표

○

□ 활성화 전략

* 청년물 활성화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 ① 마케팅 계획
- ② 홍보 계획
- ③ 사인물 개선 계획
- ④ 공동 수익모델 발굴 계획
- ⑤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 ⑥ 기타 활성화를 위한 계획

□ 확장전략

* 청년물 확장 및 확대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 ① 기반시설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 ② 공용공간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 ③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 ④ 타부처 및 민간사업 연계 계획
- ⑤ 기타 청년물 확장 및 확대 계획

□ 청년물 활성화 및 확장지원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총 _____백만원 * 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_____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활성화, 확장사업 동시추진의 경우 별도로 작성)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플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사인물 개선 등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하되 활성화사업 단독지원 및 총사업비가 5억 이내인 경우 30%까지 가능

* 기 조성 점포에 대한 개별 직접지원(임차료 및 인테리어 등)은 불가하나, 청년점포 추가조성의 경우 신규입점 점포에 대한 지원은 가능

Ⅲ

지원종료 후 노력도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 ② 지자체의 노력
- ③ 상인회의 노력

□ 조성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 ② 지자체의 노력
- ③ 상인회의 노력

□ 기존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

- ① 시장에 기여한 활동 내역
- ② 기존 상인과 공동 활동 내역

Ⅳ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추가 지원방안

- ① 지자체 및 상인회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 ②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 ③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 ④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①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 ②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공간확보(확장) 및 청년상인 추가모집 방안

- ① 확장지원 조성 공간 확보 방안
- ②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 ③ 청년상인 모집 방안(점포 추가지원 시)

IV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 ① 폐업 방지대책
-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지방비 투자 협약서

우리 _____시(도) 및 _____시(군, 구)는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_%를 _____까지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20년 월 일

_____시·도지사 : (직인)

_____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_____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등 ()명은 ___시(도) ___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_____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해당되는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_____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등 ()명은 ___시(도) ___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_____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_____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_____ 시장 상인 () 등 ()명은 __시(도) __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 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주소 및 상호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비동의 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8】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_____ 개
----------	---------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10,952개 점포 내외

2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 12월
- * 사업시작일은 평가 및 선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한 곳(50%미만 신청 불가)
- ** 민간자부담(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4 지원내용

-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5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 사업비 최대 80만원
- 매칭 : 국비 70%, 민간자부담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민간자부담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 민간자부담(30%)은 상인회 또는 지자체 부담 가능

6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7 우대조건(공고일 기준)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
- 민간자부담(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 혹은 지원대상인 시장
 -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붙임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4. 협약서

【붙임 1】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신청서

'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점포형(골목형), <input type="checkbox"/> 오픈점포형(건물형) 반드시 택 1			
신청 현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5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민간 자부담 (총사업비 30%)		
			지방비		민간
상인회 정보	상인회명		등록일		
	상인회전화		상인회팩스		
	상인회장명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p>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p>					
<p>위와 같이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p>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 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개별점포형(골목형), 오픈점포형(건물형)

1. 개요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개인시장() 법인시장()	공설시장() 공동개설시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관리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점포수	
대지면적(m ²)		건물연면적(m ²)	
매장면적(m ²)		부대시설	
취급품목			

매장현황

면적(m ²)	운영형태별(m ²)			용도형태별(m ²)	
	직영	임대	분양	상품판매	용역업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용 종사자	기타 (노점상 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비상방송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m ²)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5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5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사업 기대효과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오픈점포형(건물형)
- 예산 : 총(천원)
 -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자부담(천원)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붙임 4】 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0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① 지원규모

- (지원규모) 40곳 내외

②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 '20. 12

③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제외)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④ 신청자격

-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한 곳(50% 미만 신청 불가)
- 민간자부담(2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⑤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⑥ 지원조건

- 시장 당 총사업비 최대 300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30%, 민간 20%)

* 민간자부담금(20%)은 해당 지자체 부담 가능

7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8 우대조건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 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우선 지원)
- 민간자부담(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노후전선 정비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또는 공용구간 노후 전기설비 정비** 시장

* 화재알림시설사업 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시설현대화사업 활용한 전기분야(공용구간) 개·보수 시장

-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협약서

【붙임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개인시장() 법인시장()	공설시장() 공동개설시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관리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점포수	
대지면적(m ²)		건물연면적(m ²)	
매장면적(m ²)		부대시설	
취급품목			

매장현황

면적(m ²)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영	임대	분양	상품판매	용역업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용 종사자	기타 (노점상 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교체내용을 반드시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m ²)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점포

노후전선정비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5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50%미만 신청 불가)

* 동의서 제출 必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기재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사업 기대효과

-
-

3. 기타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 동의서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천원)

-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자부담(천원)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붙임 4】 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업명 :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① 지원규모

- (지원규모) 83곳 내외(신규 건립 38곳 내외 등)

② 사업기간

- 선정일 ~ '20. 12. 31.

③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주차장 위치, 건축계획 등에 관하여 상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및 주차장 운영, 수익금 처리 방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실시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공고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었으며 (19.7.2) 본 공고 마감일(19.7.31) 전까지 사전컨설팅 완료 시 신청 가능
- 지자체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 주차장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통보후 3개월이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반드시 신청서에 반영
- 사업신청 해당전통시장 상인수의 60%이상 동의 필수
- 주차장의 위치는 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 사업으로 신청(단, 1년안에 완공이 확실시 되는 곳은 단년사업 신청 가능)
- * (예시) 1년차 : 설계, 부지매입, 2년차 : 공사 등
- * 1년차와 2년차 사업비가 20%이상 차이나는 경우 중기부와 협의후 추진 할 것

4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5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개량시 국비를 보조 * 지하주차장도 건립 지원 가능
- 주차장 부지 매입, 주차타워, 진입로 정비, 바닥포장 및 도색,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원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요원 급여 보조, 주차관제시설 설치·기증, 전통시장의 인접 도로에 무인주차기(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등을 설치·운영하는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공동 사용

- *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비 보조
- 주차장 소유자와 상인회간 사용 계약, 주차쿠폰 발급, 시장상인의 주차확인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이 사설주차장 사용
-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는 미달시 기선정 시장 추가지원할 수 있음

6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7 신청·선정 절차

- 신청(시·군·구 → 시·도) → 현장평가·진단(시·도, 지방중기청, 외부 전문가) → 지자체 선정위원회(시·도, 지방청)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 * 시·도 주도로 우선순위 1차 선정후 지원여부 및 금액조정 등 최종선정협의회 개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선정절차 변경 할 수 있음)

8 우선지원 대상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9 우대조건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및 주차장 미보유 시장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및 경영 혁신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전통시장 및 상점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붙임7 증빙必]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재건축 등을 통해 전반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공설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붙임5 증빙必]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신청 중이거나, 설치 한 곳
 - * 사업추진 단계(신청, 선정, 추진완료)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 상점가의 경우 화재감지기를 전체점포의 50% 이상 설치한 곳 [→붙임6 증빙必]
 - *** 공단 지원을 받는 전통시장은 공단 자체자료 활용해 지원실적 파악

10 유의사항

-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관리·수익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귀속
- 지원예산의 효율성 및 주차장 건립이후 관리문제 등 해결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을 필히 작성
-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은 우선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 시 건립 지원
 -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이 없는 경우, 전통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 등 조성
- 주차장 건립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적용
- 사업비는 시·군·구가 직접 집행

-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2.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3.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4.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6.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7. 제로페이 가입현황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양식 변경 금지)

20〇〇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주차장 건립,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1. 개요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개인시장() 법인시장()	공설시장() 공동개설시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관리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점포수	
대지면적(m ²)		건물연면적(m ²)	
매장면적(m ²)		부대시설	
취급품목			

매장현황

면적(m ²)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영	임대	분양	상품판매	용역업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용 종사자	기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셋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설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설주체
○○주차장	○○○○년	○○면	○○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 또는 시설현대화)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연차별 사업비(당해년도 사업의 경우 1년차에 전액 기입)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1년차							
2년차							
합 계							

○ 주차장 건립(부지매입, 건축 구분 작성), 주차장 개보수, 공공 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등 4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건축)								
주차장 개보수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건축)			
주차장 개보수			
공공·시설주차장 이용 보조			
합 계			

-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건축 등) 및 사업비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지자체 예산 확보 등)

-
-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필수)

-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화)
- 건립예정 주차장 현황(필수)
- * 주차장건립, 공공 및 시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목적에 맞게 작성(제출시 본 설명문구 삭제)
- 우대조건* 해당 시 관련내용 기술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청년몰·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재건축 등을 통해 전반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등

주차장명	전통시장과 이격거리(m)	주차면수	고객 할인 혜택	비고
예시) oo주차장	예시) 30 m	예시) 50면 중 30면	예시)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 (사용료 2,000원/시간당)	신규/개보수/증설 구분
합 계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사업 기대효과

○

4. 기타

○ 신청일 현재 주차장 보유 여부

- 00개소, 주차가능대수 00대, 총 면적 m²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최근 3년간 고객·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자체 추진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참여 실적

○ 제로페이 가입현황

-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총 ()개 중 ()개 가입=()%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2】 동의서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3】 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상인]**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천원)

-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붙임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_____ 개
----------	---------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현장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 발견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음

【붙임 7】 제로페이 가맹점포 현황

상설 영업점포(노점, 빈점포 제외) ()개 중 ()개 가입 = 가입률()%

순번	점포명	대표자	제로페이 가맹여부 (O/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현장 샘플링 조사 결과,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 발견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음

